

세정연구 19-02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9. 12

| 정훈 · 김도연 · 박금비 · 유현영 |

연구진

연구자

정 훈 세정연구팀장

김도연 세정연구팀 변호사

박금비 세정연구팀 위촉연구원

유현영 세정연구팀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1
II. 우리나라 기부금 관리제도	3
1.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금단체의 법적 구분	3
가. 기부금의 종류	3
나. 기부금 단체의 구분	8
2. 기부금 단체의 관리	9
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및 절차	10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관리·감독	12
다. 정보공개(외부 정보공개)	18
3.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 관리	18
가. 기부금 공제 규모	18
나. 제출 자료	20
다. 표본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21
4. 기부금 관리의 문제점	21
가. OECD 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 부정 유형	21
나. 우리나라의 기부금 부정 유형	29
다. 우리나라의 기부금 시스템과 제도 관련 문제점	32
III. 주요국의 기부금 단체 관리 방안	37
1. OECD 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 단체 관리 방안	37
2. 미국	38
가. 관리주체	41
나. 자료제출 의무	44
다. 정보공개	47
라. 기타	48

3. 일본	48
가. 관리주체	50
나. 자료제출 의무 및 정보공개	51
다.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 방법	51
4. 영국	52
가. 관리주체	53
나. 자료제출 의무	54
다. 정보공개	56
라. 기타	57
5. 소결	59
IV. 주요국의 기부자 소득 또는 세액공제 관리 방안	62
1. 주요국의 기부금 공제	62
2. 오스트리아	65
가. 기부금 소득공제 개관	65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67
3. 덴마크	69
가. 기부금 소득공제 개관	69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72
4. 노르웨이	76
가. 기부금 소득공제 개관	76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78
다. 비영리단체의 조세혜택과 관리방안	81
5. 스페인	84
가. 기부금 세액공제 개관	84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87
다. 비영리단체의 조세혜택과 관리방안	90
6. 소결	94

V. 시사점 및 제언.....	97
1. 기부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전략.....	97
가. 기부행위 접근방법.....	97
나. 기부단체 규율 접근방법.....	98
2. 세부적인 기부행위 접근방법 개선방안.....	100
가. 정보수집의 강화방안.....	100
나. 분석 방법 및 조직 개선.....	106
3. 전제조건: 기부행위 투명성에 대한 인식 파악 필요.....	107
 참고문헌.....	 109



표목차

〈표 II-1〉 법정기부금의 구분(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각 호)	4
〈표 II-2〉 지정기부금의 구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	6
〈표 II-3〉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범위.....	8
〈표 II-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10
〈표 II-5〉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	19
〈표 II-6〉 국가별 탈세 및 자금세탁 유형과 관련 벌칙, 방지 시스템.....	24
〈표 II-7〉 7가지 기부금 부정 사례.....	27
〈표 II-8〉 우리나라의 기부금 공제 관련 탈세 유형.....	30
〈표 II-9〉 2014~'19까지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기부금 부정 건수.....	31
〈표 III-1〉 미국 비영리 단체별 면세구분코드.....	39
〈표 III-2〉 IRS 조문에 따른 비영리 단체 및 기타 면세 기관 유형.....	41
〈표 III-3〉 주요국의 기부금 단체관리 비교.....	61
〈표 IV-1〉 OECD 주요국의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 공제.....	63
〈표 IV-2〉 주요국 기부금 공제 관리 비교.....	96
〈표 V-1〉 정보수집 방안	101



그림목차

[그림 II-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4
[그림 II-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4
[그림 II-3]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15
[그림 II-4]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15
[그림 II-5] 기부모집금 출납부.....	16
[그림 III-1] 영국의 과거 2년간 부정 발생 유형.....	57
[그림 III-2] 영국의 기부환급 부정, 오류에 따른 세수손실(2012~13).....	58
[그림 IV-1] 덴마크 기부금 단체의 기부내역 보고 서식.....	74
[그림 IV-2] 스페인 기부금 단체의 기부내역 보고 서식 중.....	88
[그림 IV-3] 스페인 기부금 세부내역 제출 홈페이지	90
[그림 V-1] 기부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98
[그림 V-2]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양식.....	106

I. 서론

- 기부행위는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함
 - 공익목적은 정부의 세수 등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는 분야이나 모든 세부 분야까지 정부의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비영리법인 등이 이 역할을 대체·보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등은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재원으로 저소득 빈곤층·난치병·노인보호 등을 지원하여 사회후생을 향상시키고 있음

-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기부행위에 대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통해 기부자의 세액을 감경시켜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로 변경하였음
 - 또한, 2016년부터는 세제혜택을 기부단체에 귀속시키는 기부장려금제도도 도입함

- 그러나 다수의 언론 등을 통해 기부단체의 투명성 문제가 연이어 보도되었고, 그 결과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음
 - 이에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한 투명성 제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기부단체의 투명성 문제는 크게 기부금과 기부단체 운영의 투명성 두 가지 분류로 구분될 수 있음
 - 첫 번째는, 기부금 모집행위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임
 - 즉, 조세혜택으로 인해 거짓의 기부금을 공모하여 실제 기부행위 없이 조세혜택만을 위한 허위의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것임

- 두 번째는, 기부단체의 운영에 대한 것으로, 기부받은 재원을 얼마나 그 공익 목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임
 - 2013년 모 기부단체 후원금 횡령, 2015년 유령 장애인 후원단체 기부금 사기횡령, 2016년 새희망씨앗 등의 기부단체의 비리 등이 그 사례임

-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기부금의 투명성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방안으로 범위를 한정함
 -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두 번째 분류인 기부단체의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시간·지면의 제약요소를 고려함
 - 또한 기부단체 운영의 투명성은 본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세무행정과는 간접적인 관련성만 있으므로 연구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기부금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춤
 - 기부단체 운영에 있어서 기부금의 투명성 강화와 연계하여 중복 또는 과도한 행정절차가 존재할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외의 기부금 행정체계를 살펴보고 기부금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우리나라의 기부금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OECD 보고서의 국가별 기부금 부정행위에 관한 요약을 근거로 하여 국외 주요국가(미국, 일본, 영국)의 기부금 관리제도와 비교하여 개선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봄
 - 또한, 통상적인 주요국이 아닌 기부금 관리에 있어 우수하다고 알려진 국가(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II. 우리나라의 기부금 관리제도

1.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금단체의 법적 구분

가. 기부금의 종류

- 세법상의 '기부금'은, 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함¹⁾
 - 위 기부금의 정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됨

- 기부금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²⁾으로 분류됨
 - 2011. 7. 1. 이후 지급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제도 폐지에 따라 법정기부금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부금 구분 체계 또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체계로 간소화되었음
 - 정치자금기부금³⁾, 우리사주조합기부금⁴⁾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아닌 타 법(「정치자금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관리되고 그 성격 또한 세법상의 기부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중심으로 살펴봄

-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병원에 대한 기부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부금을 의미함⁵⁾

1)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2)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정·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단체로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과, 법령에 열거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기부금은 모두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국세청, 「공익법인의 세무안내」, 2019, p. 168).

3)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단체 및 시설 등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음

〈표 II-1〉 법정기부금의 구분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각 호)	내용	대상기관 및 범위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함 (같은 호 단서)
제2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 금품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의하여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 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함(「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함(「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5)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한편, 「소득세법」도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정하고 있음(「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표 II-1〉의 계속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각 호)	내용	대상기관 및 범위
제5호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제6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정기간: 2017. 1. 1. ~ 2022. 12. 31) • 재단법인 바보와 나눔(지정기간: 2017. 1. 1. ~ 2022. 12. 31)

자료: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22호 「2019년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고시」, 법인세제과 (2019. 12. 27.)

-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을 제외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말함⁶⁾
 -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정기부금을 크게 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세법상 규정한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사회복지시설에

6)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법인세법」 제24조 제4항.

지출하는 기부금, ④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5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음)

〈표 II-2〉 지정기부금의 구분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	내용	세부사항
제1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회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제2호	단체 및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표 II-2〉의 계속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	내용	세부사항
제4호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6호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같은 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는 제외함

자료: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22호 「2019년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고시」, 법인세제과 (2019. 12. 27.)

-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범위보다 넓음

〈표 II-3〉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범위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지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각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지정기부금)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등 •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⁸⁾에 지출하는 기부금.

자료: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관하여 일정 요건 및 한도 내에서 각각 세액공제⁹⁾, 필요경비산입¹⁰⁾, 손금산입¹¹⁾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소득세법」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달리 정하고 있음¹²⁾

나. 기부금 단체의 구분

- 기부금 단체 또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됨

8) 소득세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특정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보아 그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 또한 지정기부금에 포함하고 있음.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9)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1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1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12) 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의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외의 기부금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가, 나목).

- 법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 또는 위 법령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지칭함
 - 이 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음으로써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¹³⁾
 -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은 단체를 의미함¹⁴⁾
-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단체 고유사업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시 재분류할 수 있음
- 「법인세법」에서는 ‘전문모금기관, 한국학교,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음¹⁵⁾
 - 「소득세법」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작성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의 경우 기부단체를 ‘국내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에서 정하는 한국학교 또는 전문모금기관, 같은 규칙 별표 6의7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¹⁶⁾
 -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의 유형을 ‘정부 등 공공, 교육, 종교, 사회복지, 자선, 의료, 문화, 학술, 기타’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¹⁷⁾

2. 기부금 단체의 관리

- 기부금 단체 중 법정기부금단체의 경우 그 지정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공공성이 짙고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치지 쉬운 단체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부금 단체의 관리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음

13) 국세청(2019)은, 법정기부금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단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세부적으로 재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음.

14) 국세청(2019)은, 지정기부금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열거된 기부금 단체를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 세부적으로 재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음.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별지 제63호의7 서식.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7호 별지 제6호의2 서식.

1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9의9호 별지 제29호의7 서식(2).

- 그러나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비영리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법인 또는 법인 내지 단체를 일차적인 지정의 후보로 삼고 있으므로, 어떤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것인지 및 기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논의의 필요성이 큰바, 이하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보다 초점을 두어 관리 방안에 대하여 살펴봄

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및 절차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II-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구분	내용
①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1.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 2.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②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③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제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 *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하는 것임

〈표 III-4〉의 계속

구분	내용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⑤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nbbs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63&menuNo=8010200&searchNttId=MOSF_000000000029057#, 접속일자: 2019.12.23.).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충족한 단체를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면,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지정 기부금단체를 지정·고시함¹⁸⁾
-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사후관리 주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종전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 2개월 전까지 기한을 지켜 추천하여야 함¹⁹⁾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시,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추천서²⁰⁾를 비롯하여 대상 비영리법인이 추천요청 시 제출한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1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5호

2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는 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임
 - 6년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는 상실되며, 만약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후 신규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관리·감독

1) 관리주체(설립·운영·감독 등 관리기관)

- 2019년 세법개정안²¹⁾은 ‘공익법인²²⁾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하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²³⁾
 - 현행 법령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과 지정 이후 의무이행 여부 보고를 주무관청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²⁴⁾, 개정안은 지정기부금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국세청)로 위 권한을 이관함

21) 본 보고서는 본 보고서 작성연월(2019. 12.)을 기준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이 법률로 개정입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임. 세부적인 변동사항은 2020년 개정세법의 확인이 요청됨.
 22) 2019. 1. 1.부터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되었음. 이로써 현재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는 일치함.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일하여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함.
 23)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상세본)」, p. 58.

현 행	개 정 안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 (지정추천) 주무관청 → 기재부 	□ 신청·추천기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신청)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 (지정추천) 국세청 → 기재부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 사후관리 절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

2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 2021년 시행 예정인 개정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후관리의 주체로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모금·지출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당해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종전의 의무뿐 아니라 국세청장이 기부금 모집·지출에 관한 세부 내역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 공익법인의 공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루어지는 등 다수 자료가 국세청에 모이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대안임

2) 지정기부금단체의 이행의무

-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지정 후 매 사업연도마다 위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지정기부금단체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함²⁵⁾
 -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²⁶⁾

2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2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7호 별지 제6호의2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별지 제63호의7 서식.

[그림 II-5] 기부모집금 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기부모집금 출납부

연월일	수 입			지 출			관 고
	기부자 주소·성명	금 액	누 계	지출내용	금 액	누 계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3) 관리관청의 사후관리업무

-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2년마다 제출받은 의무이행 여부 서류³²⁾에 따라 점검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함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에 따라 지정 1·2년차 단체는 3년째, 지정 3·4년차 단체는 5년째, 지정 5·6년차 단체는 7년째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위 기한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에 제출하도록 지체없이 요구하여야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의무이행 여부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그 미제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국세청은 매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를 공개하고 있음³³⁾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직전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 하였을 경우 해당함³⁴⁾

3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

3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2호.

3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거짓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의 지정기부금단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 단체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을 공개함
 - 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나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됨

4)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³⁵⁾

-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다. 정보공개(외부 정보공개)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기부금 단체에 한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운영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있고, 위 기부금 단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자산총액의 0.5%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음³⁶⁾
 - 공시 대상 서류는 재무성과표, 운영성과표 등의 운영 현황 관련 서류뿐 아니라 주식 출연·취득 등의 내용, 주식 출연자와 해당 주식 법인과의 관계 등 출연 관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
- 그러나 2019년 세법 개정안은 위 조항을 개정하여 공시대상 기부금 단체를 확대하고 모든 기부금 단체에 대하여 그 공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함
 - 소규모 단체의 행정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공시의무에 관한 간편 양식을 도입하고 공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역시 3년간 유예하는 방법으로 완충을 도모하고 있음
 -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기부금 단체는 간편 양식을, 수입금액 5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단체는 보다 간소화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차등화 하고 있음

3.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 관리

가. 기부금 공제 규모

- 201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놓고 보았을 때, 종교 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의 순으로 총공제세액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제1항.

〈표 II-5〉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현황³⁷⁾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인원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인원	공제세액
	(1)	(2)	(2)	(3)	(4)	(5)				
과세대상근로소득 (총급여)규모별)	274,667	26,008	2,034,832	50,320	3,896	354	3,598,055	234,211	1,574,391	576,955
결정세액이 있는자	266,137	25,067	1,954,913	46,125	3,681	339	3,418,931	224,280	1,396,367	549,093
1천만 이하	-	-	-	-	-	-	-	-	-	-
1.5천만 이하	19	0	126	0	-	-	112	3	66	5
2천만 이하	1,598	43	9,827	38	21	1	17,449	361	9,295	1,022
3천만 이하	12,625	593	89,319	497	251	9	187,738	5,458	56,434	8,018
4천만 이하	17,910	1,284	186,074	1,290	733	35	345,586	13,667	119,490	26,757
4.5천만 이하	11,397	877	115,361	986	652	43	228,338	10,975	80,369	21,431
5천만 이하	13,620	1,112	129,569	1,236	336	22	254,130	13,678	89,294	25,645
6천만 이하	29,297	2,479	272,962	2,931	579	39	505,804	27,903	189,073	60,638
8천만 이하	73,869	6,656	568,338	8,444	717	51	901,102	56,863	380,632	143,113
1억 이하	46,038	4,492	305,803	7,224	248	30	499,192	37,567	235,412	105,408
2억 이하	54,812	5,789	250,114	13,017	141	47	438,883	42,223	211,854	121,234
3억 이하	2,701	600	16,860	3,066	2	0	25,725	4,670	15,357	15,351
5억 이하	1,289	545	6,555	2,619	0	0	9,701	3,364	5,948	9,563
10억 이하	677	369	2,949	1,924	1	62	3,870	2,251	2,416	6,591
10억 초과	285	230	1,056	2,852	0	0	1,301	5,298	727	4,317
결정세액이 없는자	8,530	941	79,919	4,195	215	15	179,124	9,931	178,024	27,861
1천만 이하	93	2	468	3	1	0	2,872	45	1,179	30
1.5천만 이하	432	15	820	9	2	0	4,132	123	3,123	143
2천만 이하	1,125	69	5,807	57	10	1	18,963	511	23,175	1,398
3천만 이하	2,741	265	24,909	294	76	4	66,498	2,756	75,049	8,905
4천만 이하	1,930	228	21,029	423	53	3	41,734	2,566	39,373	7,145
4.5천만 이하	621	68	7,337	205	40	3	13,985	1,070	11,994	2,664
5천만 이하	545	67	6,809	193	15	1	12,038	1,017	9,448	2,435
6천만 이하	671	67	8,178	371	16	2	12,400	1,151	10,059	3,169
8천만 이하	329	41	3,760	522	2	2	5,145	574	4,051	1,646
1억 이하	25	35	370	351	0	0	548	54	271	136
1억 초과	18	83	432	1,768	0	0	809	65	302	191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9) (https://stats.nts.go.kr/national/major_detail.asp?year=2018&catecode=A04021#, 접속일자: 2020.1.16.)

37)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분류 기준에 따른 표이므로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따로 표시함

나. 제출 자료

-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공제받을 기부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함³⁸⁾
 -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³⁹⁾

-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기부장려금)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⁴⁰⁾
 - 기부장려금단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의 추천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를 의미함
 - 2020년 기준 기부장려금단체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8개 단체임
 -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시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⁴¹⁾를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⁴²⁾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발급

38)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6항.

39)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제2항.

40)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4조의4호.

42) 「소득세법」 제160조의3.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⁴³⁾

- 만약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⁴⁴⁾
- 다만,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 ①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을 한 후 ② 관할 세무서로부터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여부 등) 검증을 받아 자료 제출 승인을 받고, 기부단체의 재량으로 개별 기부금 납입내역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다. 표본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 중 기부금 대상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하여, 세액공제의 적정성 검증 차원에서 다음 해 말까지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⁴⁵⁾
 - 표본조사는 표본조사 대상자 중 0.5%를 무작위 추출하여 실시함

4. 기부금 관리의 문제점

가. OECD 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 부정 유형

- 기부단체를 이용한 탈세(tax evasion)나 조세포탈(tax fraud)로 인한 세수손실과 자금세탁 문제는 현재 여러 나라 정부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임
 -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임
 - 조세포탈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때 발생하며, 탈세와 비교하여 추징되는 금액이 크고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징벌 수위가 높음

43)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3항.

44)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2항.

45) 「소득세법」 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6조.

- 기부단체를 이용한 탈세나 조세포탈 문제는 정부가 기부단체에 제공한 조세혜택을 기부단체, 기부자, 제3자가 의도적으로 잘못 이용할 때 발생함⁴⁶⁾
 - 제3자는 비적격 기부단체, 기부하지 않고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는 납세자 등을 말함

- OECD는 일찍이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s)⁴⁷⁾를 이용한 탈세, 자금세탁과 조세포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8년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선단체를 이용한 조세범죄 유형, 징후, 규모의 측정과 방지 전략을 설문조사 기법으로 조사하였음⁴⁸⁾
 - 19개 국가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과 미국임

- 조사대상 국가 중 14개 국가는 기부단체를 이용한 탈세나 자금세탁을 발견하였다고 답변했으며, 5개 국가에서는 국가 시스템을 통해 탈세나 자금세탁을 근절하고 있다고 답변함⁴⁹⁾
 - 아르헨티나,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과 미국은 관련 탈세나 자금세탁을 다수 포착하였다고 답변함⁵⁰⁾
 - 체코,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기부단체를 이용한 탈세나 자금세탁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의심되는 사례는 있다고 답변함⁵¹⁾
 -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프랑스, 독일과 터키는 국가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하여 탈세나 자금세탁을 방지한다고 답변함⁵²⁾

- 탈세나 자금세탁을 보고한 국가의 경우 그 유형을, 없다고 답변한 국가의 경우 기부단체를 이용한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46) OECD, *REPORT ON ABUSE OF CHARITIES FOR MONEY-LAUNDERING AND TAX EVASION*, p. 9, 2009. 2.

47) 자선단체는 비영리단체(non-for profit organizations) 혹은 기부단체 중 사회복지나 인류애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로 비영리단체보다 좁은 범위이며, OECD(2009) 보고서는 자선단체를 이용한 탈세나 자금세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48) OECD(2009), p. 4.

49) OECD(2009), pp. 9~11.

50) OECD(2009), pp. 9~11.

51) OECD(2009), pp. 9~11.

52) OECD(2009), pp. 9~11.

- 급변하는 조세환경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OECD 보고서는 발표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다소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보고서에서 소개한 대부분의 기부단체를 이용한 탈세가 현재까지 근절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세행정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존재함
- 자체 국세행정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 탈세나 자금세탁 사례를 근절하고 있다고 답변한 이들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는 뒷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여기서는 부정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봄
 -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는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자별 기부내역 자료를 조세혜택과 대응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금세탁을 근절하고 있다고 답변함⁵³⁾
 - 프랑스는 자금세탁 사례는 없었으나, 기부단체를 이용한 조세회피나 범죄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답변함⁵⁴⁾
 - 독일은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탈세나 자금세탁을 근절하고 있다고 답변함⁵⁵⁾
- 부정 유형은 기부단체의 자금 유용, 기부단체를 이용한 조세회피, 기부단체를 이용한 국외 자산이전이나 테러단체 지원, 기부금 공제 관련 부정 등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⁵⁶⁾
 - 기부단체의 자금 유용은 가공의 거래에 기부단체를 참여시켜 기부금을 유용한 사례, 기부단체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로 자금을 유용한 사례,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개인을 위해 사용하거나 대출, 투자, 해외이전에 사용한 사례 등이 있음⁵⁷⁾
 - 기부단체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세피난처 등의 해외로 이전시키거나 테러자금에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범죄단체가 기부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존재함⁵⁸⁾
 - 기부금 공제와 관련된 부정의 유형은 참여자와 부정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OECD 보고서는 비적격 기부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현물기부금 관련 부정, 기부하지 않은 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행,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 등을 예시로 제시함⁵⁹⁾

53) 매칭시스템은 제III절에서 자세히 설명함.

54) OECD(2009), p. 43.

55) OECD(2009), p. 10.

56) OECD(2009), pp. 42~49.

57) OECD(2009), pp. 42~49.

58) OECD(2009), pp. 42~49.

-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 신청액과 기부단체의 기부내역에 대한 매칭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장조사 과정이나 패턴 분석을 통하여 기부금이나 기부단체에 대한 부정을 포착하였다고 답변함⁶⁰⁾
- 다만, 벨기에는 기부단체의 등록이나 갱신을 신청한 단체는 국세청이 단체의 재무제표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남⁶¹⁾
 - 캐나다와 영국은 기부금 부정을 포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패턴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은 별도의 기부단체 관리팀을 운영하며 기부단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⁶²⁾

〈표 II-6〉 국가별 탈세 및 자금세탁 유형과 관련 벌칙, 방지 시스템

국가	부정 ¹⁾	부정 유형	벌칙 등 ²⁾	조사 방법
아르헨티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와 가공의 거래에 참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은 후 현금을 유용하는 사례 • 사실상 근로자인 직원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사회보장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유용 사실이 밝혀진 거래나 금액에 대해 자선단체가 받은 면세혜택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적격 기부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례 •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현물기부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례 • 현물 기부를 가장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사실상 기부단체에 물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유용한 사례 • 실제 기부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선단체 등록 및 관리 시 세무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부정이 방지 • 기부단체 담당 정부 기관에서 공동으로 법률조사 (legal investigations)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부정은 기부단체의 등록이나 등록의 갱신 시점에 수행하는 기부단체의 장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포착 • 기부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기부단체에 대한 법률조사 과정에서 포착

59) OECD(2009), pp. 42~49

60) OECD(2009), pp. 42~47

61) OECD(2009), p. 50

62) OECD(2009), pp. 50~52

〈표 II-6〉의 계속

국가	부정 ¹⁾	부정 유형	벌칙 등 ²⁾	조사 방법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적격 기부단체의 부정 • 기부단체가 의도적으로 단체의 대표나 임원의 조세회피에 참여 • 기부단체가 의도적으로 기부자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세회피 거래에 참여 • 기부단체의 의도와 다르게, 제3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기부단체가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납세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공제받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시스템은 없으나,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 기부금 관련 부정을 포착 • 예를 들어, 기부패턴의 급작스런 변화, 소득 대비 높은 기부액, 연관성 없이 여러 단체에 대한 기부, 다른 공제액(자녀공제, 사업손실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
체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개인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존재함 • 기부단체를 이용한 3~5건의 자금세탁 사례가 있었음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단체가 자금 모집을 위하여 유명 기부단체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 	-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을 공익 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일부 사례 존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가 신고한 기부액과 기부단체가 제출한 정보를 매칭하는 시스템 활용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단체와 관련한 특정인의 조사 중 기부단체에 축적한 금액 중 상당금액을 조세피난처로 송금하여 자금을 유용한 사례 확인. 조사를 통해 해외 계좌에서 총 40백만유로를 확인하였으며, 15백만 유로의 세액을 추징함 • 단체의 고유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기부금이 사용되거나 임원 개인이 자금을 유용한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당국의 범죄수사 과정에서 조세피난처 국가로부터 확보한 정보와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기부금 부정을 포착
스웨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을 유용한 사례는 존재하지만 조세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표 II-6〉의 계속

국가	부정 ¹⁾	부정 유형	벌칙 등 ²⁾	조사 방법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대출, 투자, 해외이전, 원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자금 유용한 사례 현물 기부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공제를 추가로 받는 사례 기부금의 공제 관련 부정 비적격 기부단체의 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적격기부단체와 관련된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내 자선단체 관리팀(HMRC Charities tax team)에서 기부단체의 세무신고서와 장부를 검토 패턴 분석과 비정상적 항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부정을 포착 기부금 공제 관련 부정은 지역 세무서에서 기부자의 세금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포착 기부금액이 큰 기부자는 국세청의 repayment team에서 검토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적격 기부단체의 부정 기부단체가 의도적으로 단체의 대표나 임원의 조세회피에 참여 기부단체가 의도적으로 기부자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조세회피 거래에 참여 기부단체의 의도와 다르게, 제3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기부단체가 사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납세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공제받는 경우 테러법이 기부단체를 자금세탁에 이용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러자금에 기부단체를 이용한 사례의 조사는 여러 정부기관의 공조를 통해 조사

주: 1) 부정 여부에 ○인 국가는 탈세나 자금세탁 사례를 포착하였다고 답변한 국가이며, △인 국가는 부정을 포착하지는 못하였으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답변한 국가임.

2) OECD 보고서에 벌칙을 언급한 국가에 한하여 벌칙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해당 국가의 벌칙 규정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음. 따라서 벌칙규정이 공란인 국가도 기부금 유용사례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제도를 시행 중일 수 있음.

1. 2009년 OECD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이후 제도변경 등으로 인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자료: OECD(2009) pp. 9~11, pp. 44~5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편, OECD(2009)에서는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를 이용한 탈세와 기부단체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한 7가지 사례를 소개함
 - 기부금 공제와 관련한 탈세는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공모에 따른 기부금 부정, 기부단체 단독 부정, 기부자나 세무대리인의 단독 부정으로 가능함
 - 특히 기부자와 기부단체가 공모하여 발생하는 기부금 공제에 대한 탈세는, 수령액보다 큰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현물이나 서비스 기부금액을 실제 받은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례임
 - 세무대리인이 개입된 기부금 부정은 세무대리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고객을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한 경우나, 세무대리인이 고객과 상의 없이 위조한 기부금영수증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한 경우가 있음
 - 또한 기부단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며,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기 용이하고 법인세가 면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탈세 자금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기부단체의 계좌를 이용하였음

〈표 II-7〉 7가지 기부금 부정 사례

유형	사례	탈세 연루자	세수손실
기부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사례를 받고 적격 기부단체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큰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하는 사례 • (구체적인 사례) 기부단체는 친분이 있는 기부자에게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해당 기부금영수증은 법정 서식에 따르고 있으며, 기부단체의 서명과 일련번호까지 부여되어 있음. 이 경우 일반적으로 기부자는 기부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금액의 10%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 • 기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기부금공제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 손실 • 1달러의 허위 기부금액은 0.4달러의 세수손실을 발생시킴
기부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가 적격 기부단체에 현금, 현물이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현물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치보다 큰 금액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 (구체적인 사례) 앞 사례와 유사하나, 현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다름.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기부자는 기부단체에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10%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며, 이 과정에 세무대리인이 개입된 경우 대가가 세무대리인과 기부단체에 귀속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 • 기부단체, • 세무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 기부금공제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 손실 • 1달러의 허위 기부금액은 0.4달러의 세수손실을 발생시킴

〈표 II-7〉의 계속

유형	사례	탈세 연루자	세수손실
기부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기부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한 사례 (구체적인 사례)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를 의뢰한 납세자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39곳 가톨릭 성당의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한 사례임. 허위 기부금영수증에 따른 기부액은 380만 달러, 관련 세액은 106만달러, 3개월 동안 세무대리인이 얻은 수입은 824,850달러로 나타남 경찰과 국세청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세무대리인을 검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대리인, 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 기부금공제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 손실
기부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대리인이 고객과 상의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하고 고객의 과거연도 소득세를 경정청구한 후, 세액을 본인 계좌로 환급받은 사례 (구체적인 사례) 세무대리인이 허위로 특정 성당들의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하여, 계약을 종료한 고객의 이전 기간 소득세 신고를 경정청구하고 자신의 계좌로 환급세액을 받아 가로챈 사례임. 해당 세무대리인의 고객이나 관련 기부단체는 국세청에서 통보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세무대리인의 직원의 내부고발 후 조사하여 세무대리인을 검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다 기부금공제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 손실
기부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받은 물품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사업에 이용하였으며, 현물에 대해 실제 가치보다 5배나 높은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사례 (구체적인 사례) 기부단체 A는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필요한 옷, 식료품, 교육자료 등의 물품을 기부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이때 유행이 지난 물품을 기부받은 후 유사한 최신 상품의 시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실제 물품의 가치보다 5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 또한, 기부단체 A는 컴퓨터 교육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기부받은 물품을 노숙자 쉼터에 제공하지 않고 컴퓨터 교육센터 자산으로 유용한 사례가 빈번함 조사 후 단체의 기부단체 자격을 박탈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자, 기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과 2006년 중 797백만파운드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이 중 284백만파운드의 기부금은 관련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임
테러 조직 지원, 자금 세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으로는 테러조직에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비영리 기부단체를 설립하고, 테러조직에 대한 물품지원, 관련자들의 조세회피와 자금세탁에 이용한 사례 (구체적인 사례) 미국 내 비종교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의 주소를 변경하면서 테러조직을 지원함. 표면적으로는 자선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포장하였으며, 테러조직 리더인 자가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단체가 테러조직에 자금을 송금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단체 	-

〈표 II-7〉의 계속

유형	사례	탈세 연루자	세수손실
자금 세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 커뮤니티에 기여할 목적에서 가족재단을 설립하고 조세혜택을 받았으나, 재단의 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고, 여유 자금을 재단 명의의 해외 계좌로 은닉한 사례 • (구체적인 사례) 가족재단 구성원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체에서 얻은 소득 중 일부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재단 통장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재단을 사업체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함. 재단 명의로 상당수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의 해외 은닉에 해당 계좌를 사용함 • 영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단체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재단 소유 5.5 백만파운드의 재산이 수되었으며, 관계자의 재산도 1백만파운드 압수됨

자료: OECD(2009), pp. 59~65

나. 우리나라의 기부금 부정 유형

- 기부단체를 이용한 조세범죄는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바, 기부금 부정의 유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OECD 보고서, 관계기관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부금 부정 유형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기부단체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의 측면보다는 기부금 공제부문에서의 기부금 부정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함
- 기부금 공제와 관련한 탈세는 기부단체와 기부자가 공모하여 발생하거나, 기부단체의 개입 없이 기부자나 제3자(비적격 단체 등)가 단독으로 탈세한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기부단체와 기부자의 공모로 발생한 탈세의 사례는 기부단체가 일정 대가를 받고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현물이나 서비스 기부에 대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임
 - 기부자의 부정에 의한 탈세는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하여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거나, 소득세 신고 이후 기부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의 일부나 전부 환급을 요청⁶³⁾하는 경우 등임

63) 비영리단체와의 비공개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함.

- 기부단체의 부정에 의한 탈세는 비적격기부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적격 기부단체를 가장한 자가 기부 모금행사를 열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임
-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부단체와 기부자가 공모하여 탈세하는 유형은 현행 세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나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쉽게 밝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표 II-8〉 우리나라의 기부금 공제 관련 탈세 유형

사례	탈세 연루자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단체가 기부자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받은 대가보다 큰 금액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 •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법정서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단체, • 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단체가 현물이나 서비스로 기부를 받고, 실제 받은 대가보다 큰 금액으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 •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법정 서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 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단체, • 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적격 단체가 기부자를 속이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범죄조직에서 적격 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하여 발급하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가 연말정산 기간이나 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한 후 기부단체에 기부금의 환급을 요청하여 일부나 전부 환급받은 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이 고객인 납세자를 위하여 일정 대가를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물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가 동일 기부금에 대해 여러 번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등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가 허술한 기부단체를 대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단체, • 기부자 	

자료: OECD(2009) 및 사회복지 단체와 국세청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국세청은 매년 조사한 기부단체 중에서 일정 금액이나 건수 이상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하거나 미보관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⁶⁴⁾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추징,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거짓영수증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함⁶⁵⁾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곳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이들 단체로부터 거짓 기부금영수증 921억원과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하거나 미보관한 203억원(1만 2천건) 상당의 기부금을 확인함⁶⁶⁾
 - 364곳의 단체 중 327곳에서 59,066건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었음
 - 또한 62곳의 단체에서 12,058건의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 및 미보관 사례가 확인됨

〈표 II-9〉 2014~19까지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기부금 부정 건수

(단위: 개, 건, 백만원)

연도	총명단 공개 수	거짓 기부금영수증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미작성 및 미보관		
		기부단체 수	건수	금액	기부단체 수	건수	금액
2014	102	94	26,877	41,164	13	6,566	6,764
2015	63	62	6,850	13,276	5	3,027	2,277
2016	58	55	12,727	17,113	8	1,625	2,190
2017	65	61	8,871	11,602	8	641	894
2018	11	8	303	537	4	199	893
2019	65	47	3438	8473	24	미공개	7,287
합계	364	327	59,066	92,165	62	12,058	20,305

자료: 국세청(2018년 및 2019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4.asp, 검색일자: 2019.11.18. 및 2019.12.09., 그리고 비공개 내부자료

64) 국세청(2018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4.asp, 검색일자: 2019.11.18.

65)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 국세청(2018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4.asp, 검색일자: 2019.11.18.

66) 국세청(2018년 및 2019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4.asp, 검색일자: 2019.11.18. 및 2019.12.09., 그리고 비공개 내부자료(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다. 우리나라의 기부금 시스템과 제도 관련 문제점

1) 기부자와 기부단체 관리의 문제

- 한편, 우리나라는 기부금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단체(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여러 차례 제·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도는 현재 거의 완비되었다고 볼 수 있음⁶⁷⁾
 -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하여 공익법인에 다양한 의무를 지우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미이행에 따른 제재 수단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제혜택을 박탈함⁶⁸⁾
 - 특히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그간 제도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어오던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였음⁶⁹⁾
 - 지정기부금 단체의 추천과 사후관리의 주체를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일원화
 - 공시내역이 부실한 기부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권한 신설
 - 기부단체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 강화
 -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 공익법인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신설
 - 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의무지출제도 대상 대폭 확대
- 따라서 2019년까지 개정된 제도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기부단체가 자료제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였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공익법인의 정보공개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류를 미공시하거나 미흡하게 공시한 경우,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지출 세부명세서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됨⁷⁰⁾

67) 이상신(2015), p. 38 참고.

68) 김무열, 『공익법인 세제 정비 및 후속 관리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9.18. p. 56,

69) 김무열, 『공익법인 세제 정비 및 후속 관리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9.18. pp. 63~65,

70) 박성환 외 3인(2014) pp. 515~519 (이상신(2015), p. 40 재인용)

- 과세당국이 기부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고 투명하지 못한 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의 완전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함
- 법률의 제·개정 이후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적격 기부단체나 일부 종교단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하며, 기부단체의 투명성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 기부단체의 설립, 기부금 수령, 지출과 결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⁷¹⁾하였음에도 투명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제기 시 대규모 사회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제도가 강화됨
 -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해 기부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각종 제재수단은 두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교단체나 규모가 작은 기부단체 중에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를 적발하는 데는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명단공개 요건대상 불성실 기부단체 명단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국세청이 직접 조사한 단체 중 불성실 단체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므로 실제 기부단체의 기부금영수증 관련 탈세 규모가 상당할 수도 있음
 - 기부단체의 특성상 현장조사 외의 방법을 동원하여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적발하기 쉽지 않음
 - 과세당국이 전산 분석과 샘플링을 통하여 탈세 패턴 분석이나 비적격 기부단체 적발 등은 가능하나, 기부단체와 납세자가 공모하여 발생하는 기부금 부정은 현장적발이 아니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 명단공개 대상인 불성실 기부단체 수도 국세청의 조사건수가 감소할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단체의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0개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11개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 기부단체의 부정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 아닌 국세청의 현장조사가 다른 연도보다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⁷²⁾

71) 이상신(2015), p. 38 참고

72) 비공개 인터뷰

- 실제 과세당국 내 기부단체 관리인력 부족과 기부단체의 특성상 세무조사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부단체의 부정을 국세청의 현장조사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세청 본청 내 공익법인 등의 기부단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4명이며, 지방청은 2019년 중 공익법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하여, 과세당국 내 기부단체 전담 인력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규모가 상당한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기부단체는 전담 행정인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열악한 여건에서 국세청이나 주문관청의 여러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⁷³⁾

2) 기부단체와 담당부처 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

- 기부단체가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부단체를 대상으로 법 제·개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이나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⁷⁴⁾
 - 행정 전담인력이 부족한 기부단체가 특히 최근 제·개정된 의무이행 사항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기는 쉽지 않음⁷⁵⁾
 - 예를 들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명단공개 대상인 불성실 기부금 중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하거나 미보관한 기부금은 총 203억원에 상당⁷⁶⁾하며, 규모가 영세한 기부단체는 해당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담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함
- 기부단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도 전담 인력의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아직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여, 기부단체의 관리나 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부단체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부단체의 지정신청, 기부단체로의 추천, 기부단체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모두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였으나, 여전히 각 비영리법인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은 매우 다양한 실정임

73) 비공개 인터뷰

74) 비공개 인터뷰

75) 비공개 인터뷰

76) 국세청(2018년 및 2019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4.asp, 검색일자: 2019.11.18.; 2019.12.09., 및 비공개 내부자료

3)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공모에 따른 부정 적발의 어려움

- 기부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위조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부금 공제와 관련한 부정은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공모나 비적격 기부단체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는 비적격 기부단체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와 기부단체가 공모하여 발생하는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2019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65곳 중 60곳이 종교단체에 해당하여, 종교단체의 거짓 기부금영수증 관련 탈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추적이 어려운 현금 기부는 종교단체보다 모금단체 기부가 2배 정도 많은⁷⁷⁾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명단공개 대상에 종교단체가 상당부분 포함되었음
 - 2019 사회조사에 따르면 현금 기부는 모금단체가 56.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종교단체(28.5%)와 대상자에게 직접(17.0%) 전달하는 것으로 응답함⁷⁸⁾

- 기부금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할 경우 비적격 기부단체에 선의로 기부한 기부자와 투명하게 운영되는 다른 기부단체가 피해를 입게 됨
 - 기부단체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기부단체의 탈세나 기부금 횡령에 대한 보도가 전체 기부단체의 기부성향에도 영향을 끼쳐, 부정적 보도나 사건 발생 시 기부가 크게 줄어든다고 답하였음⁷⁹⁾
 - 2019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5.6%, 향후 기부 의향은 39.9%로 감소 추세이며, 기부하지 않은 사유 중 14.9%는 기부 단체 등을 신뢰할 수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남⁸⁰⁾

77)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p. 23., 2019.11.25.,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78)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p. 23., 2019.11.25.,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79) 비공개 내부 인터뷰 자료

80)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p. 23., 2019.11.25.,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중 경제적 여유가 없다(51.9%)는 답변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기부 단체 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2년 전(8.9%)보다 현재(14.9%) 6.0%p나 증가함⁸¹⁾

- 장기적으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관리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부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방법은 행정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움

4) 민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치 부족

-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현금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본질적으로 비공개적인 성격을 지님
 - 특히 상대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종교단체 기부가 활성화된 해외와는 달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포착 가능한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부가 매우 부족함
 - 상대적으로 기부금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는 모두 민간의 자정 능력과 도덕성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된 기부금 관리 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
 - 동일한 기부행위에도 제출대상자와 제출항목 등을 달리하여 여러 번의 보고가 이루어져 제출의무자들의 협력비용과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이 모두 큰 상태임
 - 기부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하는 단체별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단체가 사후관리 의무로써 제출하는 법인/개인 기부액 총액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관리 차원에서 금액 대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임
 - 기부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외 국가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81) 통계청, 2019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p. 23., 2019.11.25.,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

Ⅲ. 주요국의 기부금 단체 관리 방안

1. OECD 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 단체 관리 방안

- OECD(2009) 보고서는, 여러 국가들이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s) 탈세 및 자금세탁 사안을 어떻게 인지하고(detect), 조사하는지(investigate)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은, 자선단체를 이용한 탈세 및 자금세탁 범죄 인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⁸²⁾
 - 자선단체 등록 또는 재등록 시 엄격한 회계 감사를 실시함(벨기에)
 - 등록된 자선단체의 경우 특히 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함(벨기에)
 - 기부자가 조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의 특이사항을 포착함(벨기에)
 - 국세청의 내부 자원을 이용하여 이상 거래의 특징을 설정하여 위험 감지 시스템을 운영함(캐나다, 이탈리아)
 - 기부자가 비용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와 기부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대응하는 데이터 매칭 시스템을 이용함(포르투갈)
 - 조세회피 전략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국세청의 비영리단체 전담팀을 운영하여 자선단체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제출 자료 및 기부자의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함(영국)

- 특이점으로는 데이터 매칭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가,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유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있었음⁸³⁾
 - 이 중 데이터 매칭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뒷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고, 아래에서는 다른 국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정보 공유 사례를 봄
 - 부처 간 정보 공유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관세 및 이민 관련 사항, 자동차 면허 보유 사항, 출생신고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82) OECD(2009), p. 16.

83) OECD(2009), p. 18.

-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다른 기관에 관련 정보 확인을 이증으로 요청함(이탈리아)
 -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자선단체가 다른 국가에 제출한 세금 관련 신고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함(네덜란드, 스페인)
-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선단체가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집중 감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함⁸⁴⁾
- 기록 검토 등을 거쳐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조사함(영국)
 - 관련 내부 부서와 외부 기관과의 공조하에 자선단체와 기부자 모두와 연관된 핵심 과세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분석함(미국)
 - 「연방소득세법」에 근거하여, IRS의 TEGE(Tax Exempt and Government Entities) 소속 조사관 중 비영리단체 전담 조사인력을 통하여 자선단체의 신고사항, 장부작성사항, 의무이행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미국

- 개인이 기본공제를 따르지 않고 공제 항목을 직접 분류하여 제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재산 기부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전체 공제 가능 한도 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함⁸⁵⁾
- 기부금 소득공제는 미국 국세청(IRS)의 승인을 받은 기관/법인/종교단체(이하 적격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회와 정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은 적격 비영리단체로 승인받기 위하여 미국 「연방세법」의 필요조건을 만족해야 함⁸⁶⁾
 - 일반적으로 운영업손실 이월금과 관계없이 조정계산된 총소득의 최대 50%(현금의 경우 60%)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20%, 30%까지 공제 가능 한도 제한이 적용되기도 함

84) OECD(2009), p. 19.

85)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charitable-contribution-deductions>, 검색일자: 2019.11.19.

86) 미국 국세청, "Charitable Contributions," <https://www.irs.gov/pub/irs-pdf/p526.pdf>, 검색일자: 2019.12.23.

〈표 Ⅲ-1〉 미국 비영리 단체별 면세구분코드

코드	기관 구분	공제 한도
PC	공공 자선단체	50%(현금의 경우 60%)
POF	민간 운영재단	50%(현금의 경우 60%)
FED	연방정부 단위의 사용을 위해서 기부금 운용이 되는 기관	50%(현금의 경우 60%)
PF	해당 연도에 지급 받은 기부금을 2~1/2개월 이내에 PC 또는 POF에 재분배하거나, 공공기금이나 소득이 PC에 지급되는 민간재단	50%
	위의 목적이 아닌 민간재단	30%
GROUP	그룹면세서류(group exemption letter)를 보유한 중앙 조직으로 해당 하위 조직 또한 면세 가능함	경우에 따라 다름
LODGE	지점 형태(lodge system)로 운영되고, 기부금이 자선 목적으로만 운용되는 국내 공제회	30%
UNKWN	단체의 지위가 결정되지 않은 자선 단체	경우에 따라 다름
EO	미국 연방세법 170조 ©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공공 자선 단체나 민간 재단이 아닌 기관	경우에 따라 다름
FORGN	해외 운용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단체가 결성되어 해외에서 활동되는 기관을 지칭함	경우에 따라 다름
SO	유형 1, 유형 2 또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유형 3 지원 조직	50%(현금의 경우 60%)
SONFI	비기능적으로 통합된 유형 3 지원 조직 지원 조직	50%(현금의 경우 60%)
SOUNK	유형이 구분되지 않은 지원 조직	50%(현금의 경우 60%)

주: 기관에 대한 지원 조직 중 해당 기관이 지원대상 기관에 의해 운영·감독·통제되는 정도에 따라 유형으로 구분함. 유형1은 지원대상 기관이 임원직에 대한 정기 선출권을 가지며, 유형2는 해당 기관의 임원진이 지원대상 기관의 임원을 동시 수행함. 유형3은 업무상 연계에 의해 작용함.

- 적격 비영리기관임을 식별하기 위하여 검색(Tax Exempt Organization Search) 플랫폼⁸⁷⁾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면세 구분코드(Deductibility Status Codes)⁸⁸⁾ 및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87) 미국 국세청, 면세기관 검색, <https://apps.irs.gov/app/eos/>, 검색일자: 2019.11.19.

88) 미국 국세청, 면세구분코드,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tax-exempt-organization-search-deductibility-status-codes>, 검색일자: 2019.12.03.

- 현금 및 재산의 형태가 아닌 기부액 중 적격 비영리단체의 사용을 위해 납부한 신탁 및 증여 등은 합법적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함
 - 개인이 적격 비영리단체에 부동산 혹은 현물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계산하여 소득에서 공제 가능함⁸⁹⁾
 - 장기 평가 주식 등의 형태로 장기간 기부를 지속해온 경우 또한 시장가치를 고려하여 공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조정된 총소득의 30%까지 시장가치로 공제 가능함⁹⁰⁾
 - 기부금 납부에 대하여 일정 형태의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의 계산 가치를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⁹¹⁾
-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공제 조건은 유사하나 법인은 다음의 경우 기부금 공제가 불가하거나 추가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가능함⁹²⁾
- 용역서비스 형태의 기부는 가치 계산의 어려움으로 공제가 불가하며, 기부와 관련된 출장 여비 지출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함⁹³⁾
 - 재고의 기부는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 경우 현물 기부와는 다른 공제 조건이 적용됨
 - 식음료, 지식 재산 등의 기부 또한 추가 공제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함
-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의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도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⁹⁴⁾

89)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p561.pdf>, 접속일자: 2020.1.2.

90) Fidelity Charitable,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guidance/charitable-tax-strategies/charitable-tax-deductions.html>, 접속일자: 2020.1.2.

91) 기부금 납부에 대한 대가는 자선 음악회 참석 기회, 기념품 증정 등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함

92) 상동

93) 용역서비스 형태의 기부는 법률서비스, 무료 신문 광고 등이 있음

94) 미국 국세청, 캐나다·멕시코·이스라엘 조세조약 참고

가. 관리주체(설립, 운영, 감독 등 관리기관)

1) 미국 비영리단체의 설립 요건

-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적격 비영리단체는 이윤 창출의 목적 없이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자선/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노동 및 농업단체, 사업체 단체 등의 유형이 있음⁹⁵⁾
 - 비영리단체의 각 유형별로 세제혜택 및 설립요건이 다름
 -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미국 「연방세법」 501(c)(3)에 따라 자선단체로 분류되지만 적격비영리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관별 유형 및 조건을 확인해야 함
 - 과세 면제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관 설립의 목적이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학, 공공 안전, 국가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육성, 어린이 또는 동물 학대 방지 등에 있어야 함

〈표 Ⅲ-2〉 IRS 조문에 따른 비영리 단체 및 기타 면세 기관 유형

조문	해당 면세 기관 유형
501(c)(3)	종교, 교육, 자선, 과학, 문학, 공공 안전, 아동학대·동물학대 방지, 국가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경기 육성
501(c)(4)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지역 노조
501(c)(5)	노동, 농업
501(c)(6)	사업체단체, 상공회, 부동산 이사회
501(c)(7)	사회·여가 모임
501(c)(8)	수혜자 협회, 공제회
501(c)(9)	자발적인 노동자 수익 협회

자료: 미국 국세청(irs.gov)

- 구체적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미 「연방세법」 170(c)에 의하여 자격을 얻은 기관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적격비영리단체로 선정될 수 있음
 - 공익 목적으로만 기부금이 운용되는 국가·주·DC 소유 기관

95) 미국 정부, <https://www.usa.gov/start-nonprofit>, 검색일자: 2019.12.02.

-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창설된 공동모금, 기업, 신탁, 기금, 재단 등으로 기부금이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학, 어린이·동물 학대 방지의 목적으로만 운용되는 기관
 - 교회, 회당 또는 기타 종교기관
 - 참전용사/퇴역군인 조직 또는 해당 목적의 신탁 등 국가 재단
 - 비영리 자원 소방회사
 - 연방법, 주법, 지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민방위 조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금전적 형태의 보상이 없는 기관
 - 지점 형태(lodge system)로 운영되고, 기부금이 자선 목적으로만 운용되는 국내 공제회
 - 공동묘지 전체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는 비영리 장묘단체
-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영리단체의 경우와 유사하며, 미국 국세청과 해당 주(state)의 세무기관에 추가적인 면세 신청을 해야 함⁹⁶⁾
- 비영리단체를 등록하는 데 있어 해당 지역별/주(state)별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용자 고유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아 비영리단체의 설립 신고 시 제시해야 함
 - 이사회 임명과 이사회에 따른 비영리 활동에 대한 규칙을 작성해야 함
 - 해당 기관이 신탁, 기업, 조합 중 어떤 법률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방 소득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므로 면세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국세청의 지침을 따라야 함⁹⁷⁾
 - 적격비영리단체(면세 기관) 신청을 위해서 국세청 서식 1023(Form 1023)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또한 사용자 고유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기관 관련 서류, 해당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 추가 첨부 사항으로 기관의 활동을 설명하는 서류와 재무제표가 있음
 - 면세기관별 구분(표 Ⅲ-1)에 따라 행정절차가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면세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항소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의 활동에 따른 연방법, 주법, 지역법 등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함

96) 상동

97)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p557.pdf>, 접속일자: 2019.12.19.

2) 미국 비영리단체 감독기관

- 각 유형의 비영리단체는 해당 면세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공익성이 유지되어야 함. 또한 연방정부는 비영리단체의 대부분의 관리·규제 의무를 주정부에 위임함⁹⁸⁾
 - 비영리단체 관할 법률은 지역마다 다르며 해당 주 또는 해당 단체가 운영활동을 하는 주의 법률을 따라야 함
 - 해당 규정은 모금활동에 있어서도 적용됨
 - 다른 주의 기부자로부터 모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기부자가 속한 주의 법률에 유의해야 함
 - 규모가 큰 지역의 주에서는 법무부 및 주 자선단체 관련부서 등의 비영리단체를 감독할 별도의 기관을 가지고 있음⁹⁹⁾

- 미국의 기부금 부정행위 조사 방식은 조세 관련 정보에 관한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 부문 등의 협조를 통하여 진행됨¹⁰⁰⁾
 - 미국 국세청 내의 면세 관련 부서(Tax Exempt and Government Entities)에서는 미국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부문에 대한 정보 보고, 기록, 정보 공개 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미국 국세청 내에 범죄조사 부서(Criminal Investigation)가 존재하여 기부금 부정에 관한 관련 부서 협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미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경우 계좌의 비이상적 이용을 조사하여 기부금 단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도 함¹⁰¹⁾
 - 자연재해를 이용한 기부금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미국 법무부의 자연재해 관련 부정 기부금 감독기관을 확인해야 함¹⁰²⁾

98) BoardEffect, <https://www.boardeffect.com/blog/government-regulations-nonprofit-organizations/>, 접속일자: 2019.12.19.

99) OECD, <https://www.oecd.org/tax/exchange-of-tax-information/42232037.pdf>, 접속일자: 2020.1.16.

100) OECD, <https://www.oecd.org/tax/exchange-of-tax-information/42232037.pdf>, 접속일자: 2020.1.13.

101) 미국 연방수사국, <https://www.fbi.gov/news/stories/bogus-charity-operator-sentenced-101918>, 접속일자: 2020.1.13.

102) 미국 법무부, <https://www.justice.gov/disaster-fraud/how-report-disaster-related-fraud>, 접속일자: 2019.12.19.

- 기부금 부정 및 면세지위 유지를 위한 규정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에서 적격비영리단체의 위험관리를 수행함¹⁰³⁾
 - 위험관리는 해당 단체의 질적 관리, 재무·회계 감사, 기타 의견 수렴 등을 포괄함
 - 또한 기부금 및 기타 면세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피고용인, 고용인 등의 임금 자료 등과 매칭하여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도 함¹⁰⁴⁾
 - 국세청 내의 면세 관련 부서에서는 적격비영리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자금의 사용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¹⁰⁵⁾

- 자선단체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자선단체 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Charity Officials, 이하 NASCO)은 미국 내의 자선단체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이행함¹⁰⁶⁾
 - NASCO는 미국 국세청, 재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자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함
 - 따라서 기부금 부정이 있을 경우 NASCO에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타 국가기관에 연계하여 이를 감독함
 - NASCO를 참고하여 해당 주(state)의 비영리단체 주요 감독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자료제출 의무

- 미 「연방세법」 501에 의하여 면세 기관으로 선정된 적격비영리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익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 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¹⁰⁷⁾
 -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간 수익 및 지출, 비사업 수익, 고용 관련 세금 신고액 및 임금, 현금 기부금액 등을 보고해야 함
 - 정기 심사의 경우 자금이 내부자의 개인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등 기부금의 부정에 관한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함

103)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the Ranking Member,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U.S. Senate,” 2014.12.

104) 상동

105) 상동

106) NASCO, <https://www.nasconet.org/>, 접속일자: 2020.01.13.

107)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pub/irs-pdf/p557.pdf>, 접속일자: 2020.1.2.

- 연간 활동 보고서는 해당 기관 납세연도(tax year)가 끝난 후 5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15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약 6개월 정도 추가 제출 기한이 있음¹⁰⁸⁾
 - 해당 면세기관이 연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후 제출할 경우 제재가 있을 수 있음¹⁰⁹⁾
 - 특히, 미제출이 3년 연속하여 지속될 경우 면세 자격을 자동적으로 박탈함
- 면세기관의 활동 관련 서식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과 같음¹¹⁰⁾. 그러나 해당 기관 또한 재무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교회, 교회의 지역 단위조합, 협약 교리조직
 - 교회의 통합 보조조직
 - 교회 소속 기관으로 은퇴 및 자금 관리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교단에 의해 운영되는 대학(college) 이하의 교육기관
 - 활동의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교회 관련 기관 및 단체
 - 기타 종교단체의 독점적 종교 활동 기관
 - 미국 「연방세법」 115에 따른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 미국 「연방세법」 501(c)(1)에 해당하는 미국 법령에 의하여 구성되어 연방소득세가 면제 되는 법인
 - 미국 「연방세법」 401에 따른 주식 상여금, 연금 또는 이익 배당 신탁(다른 형태의 서식을 제출해야함)
 - 미국 「연방세법」 501(d)에 기술된 종교 또는 사도 단체(다른 형태의 서식을 제출해야 함)
 - Revenue Procedure 95-48, 1995-2 C.B. 418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부 단위 또는 정부 계열 기관
 - 미국 「연방세법」 501(c)(3)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10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return-due-dates-for-exempt-organizations-annual-return>, 접속일자: 2020.1.7.

109) 미국 국세청, www.irs.gov/charities-non-profits/annual-exempt-organization-information-returns, 접속일자: 2020.1.7.

110)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annual-exempt-organization-return-who-must-file>, 접속일자: 2020.1.8.

- 정당의 주(state) 또는 지방위원회, 후보의 정치위원회, 간부협회, 1971년 「연방 선거 운동법」에 따른 정치위원회 조직
 - 연간 총기부금 수령액이 5만달러 이하인 면제기관으로(민간 재단 제외) 양식 990-N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
 - 미국 내 출처로부터 연간 총기부금 수령액이 5만달러 이하인 외국 기관 또는 미국 소유지에 위치한 기관으로서 양식 990-N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
- 미국 국세청은 기부금 공제를 위해 적격비영리단체에 기부한 내역¹¹¹⁾에 관한 서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관련 규칙을 가지고 있음¹¹²⁾
- 구체적으로 250달러 이상의 일회성 기부금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서식(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함. 250달러 미만의 기부액에 대해서는 이체내역과 같은 관련 자료만 요구됨
 - 기부금 납부에 대한 서식은 발행된 수표, 은행 거래내역,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을 납부 받았음을 공개하는 기부단체 발행 서류 등이 있으며 기부단체, 기부금 납부일, 기부금 납부액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또한 기부단체의 경우, 75달러 이상의 일회성 납부에 대한 대가로 재화/서비스를 얻은 기부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해당 내역을 알려야 함
 -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 세금 신고 시 항목별 공제에 필요한 서식(Schedule A-Form 1040)을 제출해야 함
 - 현금 형태의 기부금 납부 시 납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 관련 기록으로는 자동차 등의 현물 기부 시 제출한 소유권 이전 내역서, 기부에 대한 은행 기록 및 해당 기관과의 서면 형태의 기록물, 기타 현물 기부 시 제출한 서식(Form 8283)이 있음
 - 기부 영수 관련 서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국세청에서 요청 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111) 기부 내역에 관한 기록을 의미하므로 기부 관련 기부단체와의 서면 대화 내용 및 은행계좌 이체 내역 등을 포괄함

112) 미국 국세청, <https://www.usa.gov/donate-to-charity>, 접속일자: 2020.1.3.

다. 정보공개

-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면세기관으로 선정된 적격비영리단체는 미국 국세청에 제출한 모든 자료(Form 990 및 기타 연간 활동 보고서 등)를 공개해야 함¹¹³⁾
 - 해당 자료는 연간 수익활동 및 세금신고에 관한 서류(Form 990, Form 1023) 등을 포함함
 - 최근에 제출한 내역 모두 공개 대상이 되며,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의 12~18개월 이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자료들은 GuideStar, 990 Finder, Foundation Directory Online Quick Start 등의 사설 기관에 접속하여 이름, 위치, 사업자번호 등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함
 - 각 지역별 주정부 및 주 검찰청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주에서는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단체에 직접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즉시 제출해야 함
 - IRS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약 4~6주 이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정부와 공정위는 허위단체에 대한 기부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음¹¹⁴⁾¹¹⁵⁾
 - 각각의 주별로 필요한 면허 및 허가 종류에 대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주의 검찰청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함¹¹⁶⁾
 - 미국 상업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는 대형 자선단체의 기금 운용에 관한 리포트를 제공함¹¹⁷⁾

113)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form-990-resources-and-tools>, 접속일자: 2020.1.23.

114) 미국 정부, <https://www.usa.gov/donate-to-charity>, 접속일자: 2019.12.19.

115) 미국 공정위, <https://www.consumer.ftc.gov/features/how-donate-wisely-and-avoid-charity-scams#research>, 접속일자: 2020.1.13.

116) 미국 정부, <https://www.usa.gov/state-consumer>, 접속일자: 2019.12.19.

117) 상업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 <http://www.give.org/>, 접속일자: 2019.12.20.

- 미국 국세청의 면세기관 검색 플랫폼을 사용하여 적격비영리단체를 확인할 수 있음¹¹⁸⁾
 - 적격비영리단체의 지위를 잃을 경우, 해당 기관의 지위 박탈 일자를 확인할 수 있음. 이때, 해당 기관의 면세기관 여부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음
 - 종교기관을 포함한 단체 등은 검색 가능한 기관 혹은 적격비영리단체의 전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참고해야 함¹¹⁹⁾

라. 기타

- 미국 공정위에서는 적격비영리단체의 기부금 사용 및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각 단체의 정보와 평가를 보고하는 기타 외부 단체를 참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¹²⁰⁾
 - 해당 단체로는 상업개선협회(BBB Wise Giving Alliance), Charity Navigator, Charity Watch, GuideStar 등이 있음
- 미국 자선단체의 연합 기관으로 국가 비영리협회(The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가 있고 각 해당 정부 기관의 정책 정보를 비영리단체에 연결하는 역할을 함¹²¹⁾

3. 일본

- 납세자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특정 공익법인 등에 대해 특정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함¹²²⁾
 - 정당 등 기부금, NPO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과 공익 사단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중 일부는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선택이 가능함¹²³⁾

11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tax-exempt-organization-search>, 검색일자: 2020.1.13.

119)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ontributors/other-eligible-donees>, 검색일자: 2020.1.13.

120) 미국 공정위, <https://www.consumer.ftc.gov/features/how-donate-wisely-and-avoid-charity-scams>, 검색일자: 2020.1.13.

121) 비영리협회, <https://www.councilofnonprofits.org/about-us>, 접속일자: 2019.12.19.

122) 일본 국세청, No.1150 一定の寄附金を支払ったとき(寄附金控除),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50.htm>, 검색일자: 2019.12.10.

123) 일본 국세청, No.1150 一定の寄附金を支払ったとき(寄附金控除),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50.htm>, 검색일자: 2019.12.10.

- 특정 기부금은 총소득금액¹²⁴⁾의 40%와 기부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2천엔을 뺀 금액임¹²⁵⁾
 - 특정 기부금은 우리나라 지정기부금 단체와 유사하게 공익성을 갖는 단체나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다음에 열거된 7가지 경우임¹²⁶⁾
 - 국가,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에 기여하거나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는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재무부 장관이 고시로써 지정한 기부금
 - 특정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소득세법」 별표1에 열거된 공공법인 중 교육이나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
 - 특정 공익신탁법인에 대한 기부금: 특정 공익신탁 가운데 그 목적이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 인증받은 특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
 - 정당 등 기부금: 정치 활동에 대한 기부금이며, 기부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발생하거나 정치자금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제외
 - 특정 신규 중소기업이 발행한 특정 신규 주식의 납입금으로 1천만엔을 한도로 함
- 일본의 기부금 공제는 본인이 지출한 특정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득 없는 배우자가 지출한 특정 기부금도 공제받지 못함¹²⁷⁾
 - 이는 우리나라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과 차이를 보임

124) 여기서 “총소득 금액 등”은 순손실, 잡손실, 기타 각종 손실의 이월 공제 후 총소득 금액, 특별 공제 전의 분리 과세의 길이(짧은) 기간 양도소득의 금액, 주식 등과 관련되는 양도소득 등의 금액, 상장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 금액, 선물 거래에 관한 잡소득 등의 금액, 산림소득 금액 및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125) 일본 국세청, No.1150 一定の寄附金を支払ったとき(寄附金控除),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50.htm>, 검색일자: 2019.12.10.

126) 일본 국세청, No.1150 一定の寄附金を支払ったとき(寄附金控除),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50.htm>, 검색일자: 2019.12.10.

127) 「소득세법」 제7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출처: 일본 국세청, 妻名義で寄附した場合, http://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50_qa.htm, 검색일자: 2019.12.10.)

가. 관리주체

- 일본의 특정 기부금 대상단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7가지 단체로 구분되며, 각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단체의 지정과 설립 등을 관할함
 - 지정기부금의 경우, 재무부 장관이 기부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 및 기부금의 용도, 기부금 모집의 목적·목표 금액·모집지역 및 대상, 모집 기간, 모집된 기부금의 관리 방법, 기부금 모집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써 지정함(일본 「소득세법」¹²⁸⁾ 제7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¹²⁹⁾ 시행령 제216조)
 - 특정 공익증진법인의 경우 일본 「소득세법」 별표 1의 공익법인과 일본 「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독립 행정법인, 적십자사, 특정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이에 해당함
 - 인정NPO법인¹³⁰⁾의 경우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및 도시 등 사무소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관할기관을 정함¹³¹⁾
 -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인정NPO법인의 지정주체였으나, 2012년 4월 1일부터 관할기관을 세분화하였음¹³²⁾
 - 인정NPO법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단체는, 해당 관할기관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지원테스트(PST)¹³³⁾ 적합 여부 및 기부금의 지출 대상인 주요 사업 등을 기재하여 관할기관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함

128) 일본 정부,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0AC0000000033#769, 접속일자: 2020.1.28. 이하 동일.

129) 일본 정부,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0CO0000000096#1946, 접속일자: 2020.1.28. 이하 동일.

130) 인정NPO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포털 링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음; <https://www.npo-homepage.go.jp/npoportal/>, 접속일자: 2020.1.28.

131) 관할기관 목록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npo-homepage.go.jp/shokatsucho>, 접속일자: 2020.1.28.

132) <https://www.npo-homepage.go.jp/about/npo-kisochishiki/ninteiseido>, 접속일자: 2020.1.28.

133) 해당 단체가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단체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서, 일본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45조 이하에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음.

나. 자료 제출 의무 및 정보공개

- 인정NPO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공지원테스트(PST)의 요건 해당 여부와 함께 관할기관에 실적 판정 대상 기간의 각 사업연도별 기부자 명단 및 주소, 기부자의 기부금액 및 일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일본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44조)
 - 위 서류를 거짓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NPO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할기관은 당해 법인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일본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67조), 그 법인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같은 법 제77조)

- 인정NPO법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시킬 의무가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보고서 등을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¹³⁴⁾
 - 대상 서류는 사업보고서, 활동계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등이 있음(일본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28조)¹³⁵⁾
 - 법인별, 관할기관별로 열람 가능 서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관할기관은 인정NPO법인의 법령 위반 등 특정 경우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나아가, 경우에 따라 당해 법인에 개선조치를 요구하거나 인정NPO법인의 인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음
 - 제출 대상 서류를 3년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인정NPO법인으로서 설립 인정을 받았음에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 방법

- 기부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 시 기부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기부금 영수증과 해당 기부단체가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¹³⁶⁾

134) <https://www.npo-homepage.go.jp/about/npo-kisochishiki/nposeido-gaiyou>, 접속일자: 2020.1.28.

135) <https://www.npo-homepage.go.jp/qa/ninshouseido/ninshou-houkoku>, 접속일자: 2020.1.28.

136)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150.htm>, 접속일자: 2020.1.28.

- 일본은 2018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및 연말정산분부터 기부금 수령자가 기부금 공제 용도로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기부금 공제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¹³⁷⁾
 - 전자적 방법으로 공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범위에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생명보험료 공제, 지진보험료 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도 포함됨
 - 기부자는 기부금 수령자로부터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받은 공제증명서를 일정한 방법(QR코드 부착)으로 인쇄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음
 - 일본 국세청은 기부금 수령자가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음¹³⁸⁾

4. 영국

- 영국은 통상적으로 기부조력(gift-aid)과 급여공제(payroll-giving) 체계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기부단체 또는 기부자인 납세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기부조력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의 형태에 따라 다른 형태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본세율 구간에는 납세자에게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¹³⁹⁾
 - 기본세율 20%가 적용되는 납세자의 기부에 대해서 기부단체가 4년 내에 혜택을 신청하면 기부액의 25%를 과세관청에서 기부단체에 추가기부하지만, 납세자에게는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 세율 40% 또는 추가세율 45%가 적용되는 납세자의 기부에 대해서는 추가기부 이외에 추가기부 25%를 증액한 금액의 기본세율 20%와의 차이분만큼(즉, 20% 또는 25%)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급여공제는 근로 또는 연금 소득 지급자가 원천적으로 기부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체계로, 소득에서 기부금 자체가 차감되어 한계세율만큼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함¹⁴⁰⁾
 - 이외에 증권과 부동산 기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137)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taxes/shiraberu/shinkoku/kakutei/koujyo.htm>, 접속일자: 2020.1.28.
138) <http://www.e-tax.nta.go.jp/shiyo/shiyo-kojo.htm>, 접속일자: 2020.1.28.
139)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able-giving-hs342-self-assessment-helphsheet/hs342-charitable-giving-2019>, 접속일자: 2020.1.4.
140) Gov.UK, <https://www.gov.uk/donating-to-charity/donating-straight-from-your-wages-or-pension>, 접속일자: 2020.1.4.

가. 관리주체

- 기부단체의 관리주체는 자선위원회(the Charity Commission)와 과세관청(HMRC)으로 나누어져 있음
 - 자선위원회는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350명 규모의 독립기관으로, 대중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의 등록과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¹⁴¹⁾
 - 기부단체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HMRC)에 등록을 해야 함

- 자선위원회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기부단체의 적정한 등록과 유지를 담당하고 기부단체 운영의 감독도 수행하고 있음¹⁴²⁾
 - 이러한 등록과 유지는 단체가 자선적인지 여부와 등록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과 단체가 자선적이지 않아서 존재 또는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취소를 하는 것을 포함함
 - 보다 구체적으로 6가지의 업무를 위원회의 책무로 기술하고 있음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자선목적으로만 설립된 적격단체의 등록
 - 부적정한 운영에 대한 행정집행
 - 매년 활동내역 보고를 포함한 기부단체의 법적 요구사항 준수 촉진
 - 매년 대중에게 개별 등록된 기부단체의 적절한 정보 제공
 - 기부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제공
 - 기부단체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자선위원회는 부정자문패널(fraud advisory panel)을 지원하여 기부단체의 부정 조사와 자문을 받고 있음
 - 이 패널은 회원들의 회비, 공인회계사회 등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독립된 비영리 단체임
 - 패널은 2019년도에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기부단체 부정예방을 위한 고찰과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함¹⁴³⁾

141)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harity-commission/about>, 접속일자: 2020.1.4.

142)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harity-commission/about>, 접속일자: 2020.1.4.

- 기부단체가 기부조력 등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별도의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자선위원회 이외에 과세관청이 기부단체의 관리에 관여하고 있음¹⁴⁴⁾
 - HMRC는 기부단체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다섯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 EU,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또는 노르웨이에 근거를 둠
 - 자선목적으로만 설립
 - 해당되는 경우, 자선위원회 또는 여타 규제기관에 등록
 - 적합하고 적정한(fit and proper) 인(人)에 의해 운영됨
 - 과세관청에 인증됨

나. 자료제출 의무¹⁴⁵⁾

1) 등록 시¹⁴⁶⁾

- 기부단체가 자선위원회 등록 시 관리규약(governing document 또는 rulebook)을 제출하도록 함
 - 관리규약은 자선단체의 목적, 목적 달성 방법(자금조달방법), 운영 주체와 구성원 및 운영 방법, 관리자의 선임방법, 관리자의 지출 및 관리자, 투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출 규정,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관리자의 능력, 해산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외에 관리규약은 관리자에게 운영지침이 되어야 하므로 결론을 위한 관리자의 동의 숫자, 채용방법, 관리자 회의 운영과 기부단체의 자산관리방법과 장부유지, 내부적 논의의 결정방법에 대해 규정되어야 함

- 기부단체가 과세관청 등록 시에는 위원회 등록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음¹⁴⁷⁾

143) Fraud Advisory Panel, "Preventing Charity Fraud Insights+Action", October 2019.

144) Gov.UK, <https://www.gov.uk/charities-and-tax/get-recognition>, 접속일자: 2020.1.4.

145) Gov.UK, <https://www.gov.uk/guidance/prepare-a-charity-annual-return>, 접속일자: 2020.1.4.

146) Gov.UK, <https://www.gov.uk/setting-up-charity/governing-document>, 접속일자: 2020.1.4.

147) Gov.UK, <https://www.gov.uk/charity-recognition-hmrc>, 접속일자: 2020.1.4.

- 명시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단체의 목적과 관리서면 등 이외에 은행계좌 등의 금융계좌, 관리자의 생년월일과 보험번호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2) 운영 시

- 기부단체는 매년 연차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단체의 유형과 수입금액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정보의 수준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10개월으로, 3월 31일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기부단체의 경우 2020년 1월 31일까지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
 - 단체의 유형은 자선회사(companies), 법인이 아닌 사단(unincorporated organisations)과 법인(incorporated organisations)으로 나뉘며, 전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다시 제공 정보가 나뉨
- 자선회사 등은 수입금액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수입금액이 1만파운드 미만인 경우 수입과 지출내역만을, 1만파운드에서 2만 5천파운드인 경우 자선단체의 질문내역에 대한 답을 제출하여야 함
 - 수입금액이 2만 5천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질문내역에 대한 답과 관리자(trustee)의 연차보고서, 계정 정보, 독립된 조사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수입이 1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총자산이 326만파운드를 초과하고 수입이 25만파운드를 초과하면 완전한 감사가 요구됨
- 법인인 기부단체도 자선회사 등과 유사한 요구사항이 존재하나 수입금액이 낮더라도 보다 강화된 신고를 요구함
 - 모든 법인인 기부단체에 예외없이 연차보고서와 더불어 질문서의 답변과 관리자의 연차보고서 및 계정을 보고해야 함
 - 수입금액 2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계정 정보, 독립된 조사인의 보고서 등 자선회사 등과 동일한 요구사항이 적용됨
- 계정정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선위원회의 규율 여부, 근거 지역(스코틀랜드 등),

회사 여부, 모금액액에 따라 계정의 내역, 감사 여부, 과세관청 등에 정보제공이 차별적으로 요구됨¹⁴⁸⁾

- 대규모 단체의 계정정보는 수입, 지출, 은행계좌, 자산, 부채,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함한 여타 주요 정보가 요구되며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가 요구됨
- 단체가 회사인 경우 과세관청과 공시시스템(Companies House)에 계정정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단체에 요구되는 단체의 형태와 활동에 대한 질문임

- 주요 내용은 수입과 지출 등의 재무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입과 약정, 해외로부터의 수입 또는 수행된 활동, 자회사, 관리자에 대한 지출, 급여와 복리후생 등의 내역임
- 2018~19년의 내역을 보면 총 39개 항목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어 연차보고서 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 과세관청은 최초 등록 후 별다른 신고 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음¹⁴⁹⁾

- 정보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등록 시 요구된 정보의 수정에 그치고 있음
- 이는 기부단체의 관리는 자선위원회에서 모든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

다. 정보공개¹⁵⁰⁾

□ 자선위원회는 각 기부단체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음

- 2020년 1월 현재 정보를 과거 버전에서 새로운 형식의 베타버전으로 이전 중임

□ 공개되는 정보는 기부단체의 통계와 개별 기부단체의 개별 정보를 나타내고 있음

- 통계는 전반적인 개괄, 수입구간별 또는 수입형태별 금액, 수입금액 순위 및 이의 과거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148) Gov.UK, <https://www.gov.uk/prepare-charitys-annual-accounts>, 접속일자: 2020.1.4.

149) Gov.UK, <https://www.gov.uk/charities-and-tax/get-recognition>, 접속일자: 2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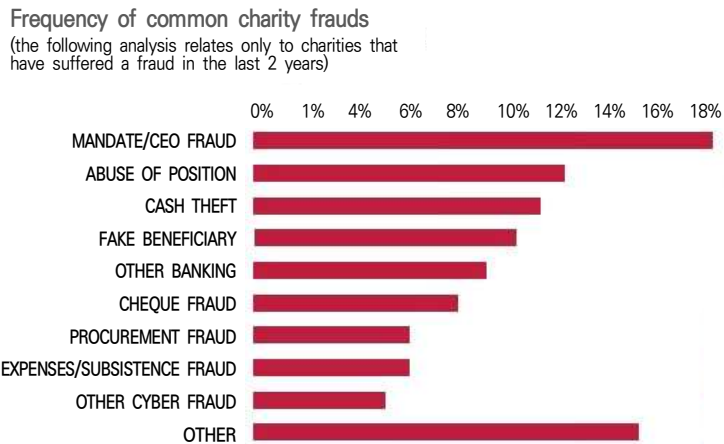
150) <https://apps.charitycommission.gov.uk/Showcharity/RegisterOfCharities/CharityWithPartB.aspx?RegisteredCharityNumber=209131&SubsidiaryNumber=0>, 접속일자: 2020.1.4.

- 개별 기부단체별 통계는 기부단체의 개괄, 과거 수입·지출, 관리자의 명단 및 관리자의 다른 기부단체 관리인 겸임 현황, 기부활동의 내역·지역·목적·분류·방법, 계정정보 (대부분 연차보고서가 첨부됨) 등이 보여주고 있음
- 모든 정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이며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음

라. 기타

- 자선위원회는 기부단체의 부정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기부금이 아닌 기부단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언급하고 있음
- 부정자문패널의 2019년 보고서에서도 실제 부정의 발생 통계가 관리자의 부정, 권리 남용, 현금 절취 등의 순위로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납세자의 기부행위에 따른 조세포탈에 대한 항목은 확인되지 않음

[그림 III-1] 영국의 과거 2년간 부정 발생 유형



자료: Fraud Advisory Panel, *Preventing Charity Fraud Insights+Action*, October 2019,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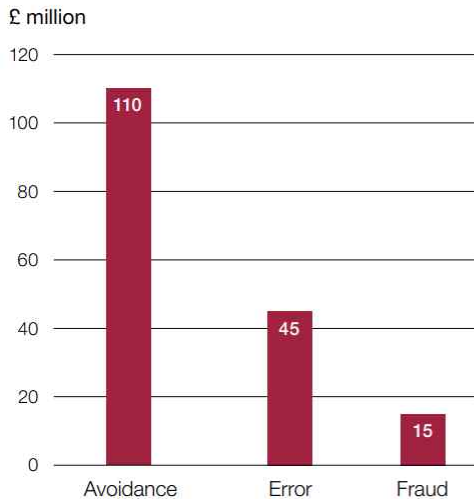
- 위원회의 2015년 지침에서 조세상의 부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나 역시 대부분의 내용은 기부단체의 면세지위의 이용, 증빙 미비, 고용의 형태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적격기부가 이루어지 않았음에도 부정적인 기부조력 혜택 청구가 하나 포함되어 있을 뿐임

- 과세관청에서도 사전적인 절차보다는 기부단체 세무조사를 통해 기부조력 혜택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보임¹⁵¹⁾
- 영국에서도 기부를 통한 조세회피 등의 유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특정 사전적인 예방절차는 확인되지 않음
 - 규제기관 간의 정보교환, 분석 및 조사 인력 증원 등의 대응만 확인되고 있음¹⁵²⁾

[그림 III-2] 영국의 기부환급 부정, 오류에 따른 세수손실(2012~13)

Estimate of losses in 2012-13

Avoidance accounts for the largest losses from tax reliefs on charitable donations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Gift Aid and reliefs on donations*, November 2013, p.10.

- 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조사대상 단체를 선별하고 사전적인 질문서와 단체의 답변서를 통해 합리성을 고려한 후, 기록 등을 조사하여 기부조력 환급액의 적정성을 평가함
 - 표본 추출에 기반한 조사도 병행하여 수행됨

151)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rities-detailed-guidance-notes/chapter-7-audits-by-hmrc-charities>, 접속일자: 2020.1.4.

152) House of Commons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Gift Aid and other tax reliefs on charitable donations*, January 2014, pp. 12~14.

5. 소결

- OECD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국가의 기부금 단체 관리방안 중 국가별 기부금 관리에 관한 특이 사항은 회계감사부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벨기에: 단체의 등록/재등록 시 엄격한 회계감사, 기부금영수증 발행 의무 이행 검사, 단체의 제출자료 특이 사항 감시
 - 캐나다: 국세청 내부 자원을 이용한 이상 거래 특징 및 위험감지 시스템 운영
 - 포르투갈: 기부자가 제출한 자료와 기부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대응하는 데이터 매칭 시스템 이용
 - 이탈리아: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다른 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증 확인 및 국세청 내부 자원을 이용한 위험감지 시스템 운영
 - 네덜란드, 스페인: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제출한 세금신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함

- 주요국의 기부금 단체의 관리 주체는 과세관청, 광역자치단체, 자선위원회 등이 있음
 - 미국의 기부금 단체 관리 주체는 과세관청으로 특히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특징임
 - 일본의 기부금 단체 관리 주체는 승인된 비영리단체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광역자치단체임
 - 영국 기부금 단체의 관리주체는 자선위원회와 과세관청이며 특히 자선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임

- 기부금 단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나라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구체적인 항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미국의 기부금 단체는 각 단체의 기부금 내역, 기부자 명단, 해당 기관의 연차보고서, 기관의 고용 관련 내역 등을 과세관청에 매년 제출해야 함
 - 일본의 승인된 비영리단체는 각 사업연도별 기부자 명단과 기부자의 주소, 기부금액 및 기부일시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활동계산서 등도 제출해야 함

- 영국의 기부금 단체는 단체 등록 시 자선위원회에 해당 단체의 관리규약을 제출하고 과세관청에 재무정보 및 기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연차보고서와 재무 정보 및 기부내역을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항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미국의 기부금 단체는 제출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요청된 정보는 해당 기부금 단체, 과세관청, 관련 정부부처, 또는 기타 민간기관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
 - 일본의 경우, 승인된 비영리단체의 사업보고서, 활동계산서 등 관할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열람이 가능하나 해당 법인별/관할 기관별로 요구되는 서류 및 열람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영국의 자선위원회는 기부단체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항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도 공개하고 있음. 또한 전체 기부단체의 현황, 통계 자료도 공개함

- 기부금단체의 관리주체들은 기부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국 과세관청은 자료 미제출 및 기부단체 부정 발생 시 해당 단체의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고, 부정 방지를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 감사·압수수색, 질적 관리·의견수렴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일본의 관리주체는 승인된 비영리단체의 법령 위반,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에 대하여 관련 내용의 보고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선조치 요구 또는 승인 요건을 취소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함
 - 영국 기부금 단체 관리주체 중 자선위원회는 기부단체의 자체적인 운영 부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세청은 비영리단체 전담팀을 운영하여 자선단체 제출 자료를 검토하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사함

〈표 Ⅲ-3〉 주요국의 기부금 단체관리 비교

국가	관리주체	제출자료	정보공개	관리주체 및 과세관청의 대응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수익 및 지출, 비사업 수익, 고용 관련 세금 신고액 및 임금, 현금 기부금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보고서, 활동계산서 등 제출서류 과세관청, 주정부, 사설 기관 등을 통하여 최신 정보 열람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미제출 혹은 기부단체 부정 발생 시 면세지위 박탈 가능 위험관리를 수행하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체의 자금 등 데이터화하여 관리함 감사, 적격비영리 기관의 질적 관리, 기타 의견 수렴 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된 비영리단체(NPO)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사업연도별 기부자 명단 및 주소, 기부자의 기부금액 및 일시를 기재한 서류 사업보고서, 활동계산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보고서, 활동계산서 등 제출 서류(관할기관에 따라 범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조치 요구 가능 특례 인정 취소 가능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선위원회 과세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능력·관리자 등을 포함한 관리규약, 은행계좌 및 회계계정, 관리자 세부정보, 등록번호, 목적, 정부등록 아이디와 비밀번호 연차보고서: 수입과 지출 등 (규모 등에 따라) 재무정보·해외수입·비용 등에 대한 답변서, 감사보고서, 계좌, 관리자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선위원회에서 기부단체의 정보를 공개함 기부단체 전체 통계, 개별 내역, 수입·지출, 관리자 명단 및 검임, 활동 내역·지역·목적·분류·방법, 계정정보를 포함한 연차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선위원회는 기부단체 자체적인 운영 부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조세상의 설계에서도 사전적인 방지절차보다는 사후적인 적정성 검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추정됨

출처: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IV. 주요국의 기부자 소득 또는 세액공제 관리 방안

1. 주요국의 기부금 공제

- 주요 19개 국가의 기부금 공제금액 결정방식을 조사한 결과, 기부단체가 기부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청에 보고한 금액에 따라 기부자의 공제액을 결정(유형 1)하는 국가가 4개, 기부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에 따라 공제액을 결정(유형 2)하는 국가가 15개임
 - 유형 1의 경우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기부자와 기부내역을 보고하면, 기부자가 별도 기부금액에 대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방식임
 - 유형 2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액을 확인한 후, 기부자가 국세청에 공제 대상 기부액을 신고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는 기부자가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공제받을 기부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유형 2에 해당함

- 유형 1과 비교할 때 유형 2는 기부자가 기부단체 몰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과다하게 기부금 공제를 받는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움
 - OECD가 발간한 보고서¹⁵³⁾에서 기부단체 및 기부금을 이용한 여러 가지 탈세 유형을 소개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부금 세액 또는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살펴봄
 - 첫 번째 유형은 기부단체가 기부자로부터 일정의 사례를 받고 실제 받은 금액보다 큰 금액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임
 - 두 번째 유형은 기부자가 기부단체 몰래 기부단체의 기부금영수증을 위조하여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임
 - 유형 1의 기부금액 결정방식에 따르더라도 기부단체와 기부자가 공모하여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탈세를 방지하기 어려우나, 기부단체와의 공모 없이 기부자가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는 탈세행위는 방지할 수 있음

153) OECD(2009) pp. 12~14.

〈표 IV-1〉 OECD 주요국의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 공제

국가	기부금 공제	공제 대상 금액	공제 금액 결정 주체 ¹⁾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자료
오스트리아	소득공제	기부단체가 제출한 금액	유형 1	• 기부단체가 기부자별 성명, 생년월일, 기부금액을 국세청에 제출
벨기에	소득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	유형 2	•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증명서(certificate) 발급 요청
체코	소득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	유형 2	•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기부금영수증(gift confirmation receipt) 발급 요청
덴마크	소득공제	기부단체가 제출한 금액	유형 1	• 기부단체가 기부자에 대한 세부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핀란드	없음 ²⁾	-	-	-
프랑스	세액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	유형 2	•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 국세청 요청 시 기부에 대한 정보 제공
독일	소득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	유형 2	• 기부자가 250유로를 초과한 기부금액 대해 기부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아일랜드	세액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으로 추정	유형 2	-
네덜란드	소득공제	별도 언급은 없으나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으로 판단	유형 2	•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 없음
노르웨이	소득공제	기부단체가 제출한 금액	유형 1	• 기부단체가 기부금 세부내역과 기부자의 기부사실 동의서를 국세청에 제출 • 기부단체도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요청
스페인	세액공제	기부단체가 제출한 금액	유형 1	• 기부단체가 기부금 세부내역을 재무부 (the Ministry of Finance)에 제출
스웨덴	없음	-	-	-
스위스	소득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	유형 2	•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영국	소득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으로 추정	유형 2	-
우리나라	세액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	유형 2	•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표 IV-1〉의 계속

국가	기부금 공제	공제 대상 금액	공제 금액 결정 주체 ¹⁾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자료
일본	소득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	유형 2	•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미국	소득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	유형 2	• 기부자가 \$250 이상의 현금 또는 상품 기부 시 기부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캐나다	세액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	유형 2	•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호주	세액공제	기부자가 제출한 금액	유형 2	•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주: 1) 기부금 공제를 위한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유형 1) 국세청에서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 내역을 보고받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액을 결정하는 경우
 (유형 2) 기부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기부자의 공제액이 결정되며, 기부자가 신고 전 기부금액의 확인을 위해 기부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2) 핀란드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소재 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1. 이탈리아, 슬로바키아의 경우 기부금 공제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1. European Fundraising Association(2018), pp. 7~9. 참고

2. 덴마크의 경우 IBFD(Denmark-Individual Tax), 검색일자: 2019. 10. 1., OECD(2009) p.10 및 Mrs Alexandra Grainger, "Donations to SCI are tax deductible across the European Union," 2015.5.29.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

□ 이에 유형 1에 따라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영 중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와 스페인의 과세당국이 기부금 공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부단체로부터 보고받는 내역과 보고 방식을 조사함

2. 오스트리아

가. 기부금 소득공제 개관

1) 기부금 공제 제도¹⁵⁴⁾

- 기부행위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으나,¹⁵⁵⁾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 시 당해 과세소득의 10%의 한도 내에서 공제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기부는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¹⁵⁶⁾ 법령이나 재무부령에 의해 정해진 단체에 기부하는 금전 또는 현물은 과세소득의 10% 한도에서 공제될 수 있음
 - 한도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은 손실의 상계 후 금액임

2) 기부금 공제 대상 비영리단체¹⁵⁷⁾

-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단체는 법령에서 혜택을 부여한 것과 재무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재무부 홈페이지에는 매일 현황을 반영한 기부단체 목록을 공개하고 있음
 - 법령으로 혜택을 부여한 단체는 대학, 법정기구 등임
 - 대학, 연구개발을 위해 연방 또는 지방정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구,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Osterreich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및 유사 EU 회원국의 단체 또는 국가로 오스트리아와 연구·교육 등을 위해 협정 등을 체결한 경우
 - 오스트리아 국립 도서관, 외교아카데미, 오스트리아 고고학 연구소, 오스트리아 역사연구 연구소, 일부 박물관과 연방 추모기념관
 - 국제 부패방지 아카데미
 - 자발적 소방부문 및 지역소방단체
 - 재무부령으로 정한 단체는 대학, 장애인협회 등으로 그 목록은 오스트리아 재무부 홈페이지¹⁵⁸⁾에 공개되어 있음

154)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The Tax Book*, 2019, 2018, pp. 77~78.

155) 오스트리아 재무부, <https://www.bmf.gv.at/steuern/selbststaendige-unternehmer/einkommensteuer/absetzbarkeit-spenden.html>, 검색일자: 2019.10.22.

156) section 4a of the EStG.

157)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The Tax Book* 2019, 2018, pp. 77~78 ; H. Buzanich, *Austria - Individual Taxation* sec. 1., Country Tax Guides IBFD, 접속일자 2019. 10. 21.

- 대학·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 등이 대주주로 소유하고 있는 지역단체의 특정 종속기관 및 연구·교육을 위해 운영되는 법적 기부단체
 - 장애인 스포츠 함양을 위해 운영되는 특정 협회
 - 공공 이용이 가능한 오스트리아 예술과 문화 또는 예술작품에 참여하는 특정 기관
 - 자산 목적,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재난 개선, 국내·외 재난 지원, 환경, 자연, 동물 구호를 포함한 야생 생태계 보호에 활동하거나 이를 위해 모금하는 기관
 - 이외에 5년 내에 50만유로를 한도로 일부 사적 기구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의 자산기부에 혜택이 부여됨
 - 요건으로 소득을 적시에 사용하고, 적절한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확약이 존재하며, 재무부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제한도가 5년간 5만유로로 제한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 시 관련 금액의 30%가 과세됨
- 개인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단체는 과세관청에 기부금과 관련한 보고 의무가 있음
-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기부금 단체는 과세관청에 기부내역을 직접보고하여 기부금이 자동적으로 기부자의 소득신고에 인식되도록 하여야 함
- 예술, 문화 등의 기부단체는 등록신청 시점과 매년 감사인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부여됨¹⁵⁹⁾
-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및 기부자 공제 혜택을 위한 등록 신청 시 정보와 관련 문서의 제출이 요구됨
 - 신청 단체의 주소, 등록 번호, 세무등록번호 및 관할 과세관청의 정보
 - 정관 등의 법적 문서와 이전 3개년간 기부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감사인의 확인서
 - 이후 매년 재무상태표일 이후 9개월 내에 해당 기간 동안 기부단체 허가 시 충족한 조건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감사인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58) 오스트리아 재무부, https://service.bmf.gv.at/Service/allg/spenden/show_mast.asp, 접속일자 2019.10.21.

159) 오스트리아 재무부, <https://www.bmf.gv.at/steuern/selbststaendige-unternehmer/einkommensteuer/Info-spenden-kuenstlerische-Taetigkeiten.html>, 검색일자: 2019.10.22.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1) 기부금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주체¹⁶⁰⁾

- 오스트리아는 기부단체가 과세관청에 기부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소득신고 시 자동적으로 기부금 금액이 확정되도록 구성함
 - 2017년 기부금 관련 공제 절차를 개편하여 납세자의 소득신고 시 FinanzOnline에서 모든 기부항목이 자동적으로 기재되도록 체계를 구성함
 - 이러한 자동채움 서비스를 위해서 기부단체는 기부내역을 과세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2) 자료 제출 방식¹⁶¹⁾

- 납세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부단체에 공개하고, 기부단체는 기부자의 정보와 금액 등을 과세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 개인은 기부 시 완전한 형태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부단체에 알려야 하며, 특히 성명은 거주자 등록 양식의 성명과 일치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함
 - 이러한 정보는 조세와 부담금을 위한 암호화 영역의 특정 개인식별규정(verschlüsseltes bereichsspezifisches Personenkennzeichen für Steuern und Abgaben)에 따라 최신 IT기술로 암호화되어 전송되어 금융당국만이 식별할 수 있음
 - 2017년 1월 1일 이후 기부단체는 기부받은 해의 익년 2월 말까지 기부금액을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함
 -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부단체는 사전에 재무부에 등록이 요구되며,¹⁶²⁾ 전송 정보는 FinanzOnline을 통해서만 이루어짐
 - 제공되는 정보는 지급이 이루어진 기간, 지급액, 기부자 정보임
 - 기부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납세자는 기부단체에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함

160) 오스트리아 재무부, https://english.bmf.gv.at/taxation/Donations_automatically_decutible.html, 검색일자: 2019.10.22.

161) 오스트리아 재무부, https://english.bmf.gv.at/taxation/Donations_automatically_decutible.html, 검색일자: 2019.10.22.

162)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Datenübermittlung Sonderausgaben für übermittlungspflichtige Organisationen, 2017, p. 9.

- 기부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부단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이를 정정할 방법이 없다면, 기부단체는 과세관청에 정보제공할 의무는 없음¹⁶³⁾

- 납세자는 자신의 정보가 과세관청에 전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납세자가 기부 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미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서면으로 자신의 정보를 과세관청에 보고하지 않도록 기부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기부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자발적인 익명기부도 가능하나 역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오스트리아 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기부단체의 기부는 기부자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¹⁶⁴⁾
 - 국외 단체의 기부자는 기부단체의 상호,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의 정보를 직접 과세관청에 제공해야 함
 - 또한 기부단체로 등록된 국외 기부단체로부터 기부자의 주소와 등록번호를 포함한 기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확인서는 기부 건별 또는 연간 합계액으로 발행될 수 있음

3) 미제출에 대한 제재

- 기부단체가 기부금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지 않으면 기부한 납세자의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부단체에 행정적 불이익이 부과됨¹⁶⁵⁾
 - 원칙적으로 기부단체가 기부금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기부금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납세자는 기부단체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함
 - 계속적으로 기부단체가 정보제공을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기부단체의 정보 제공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163) 오스트리아 재무부, <https://www.bmf.gv.at/steuern/selbststaendige-unternehmer/einkommensteuer/besondere-informationen-uebermittlungspflichtige-organisati.html>, 검색일자: 2019.10.22.

164) 오스트리아 재무부, <https://www.bmf.gv.at/steuern/selbststaendige-unternehmer/einkommensteuer/Info-spenden-kuenstlerische-Taetigkeiten.html>, 검색일자: 2019.10.22.

165) 오스트리아 재무부, <https://www.bmf.gv.at/steuern/selbststaendige-unternehmer/einkommensteuer/besondere-informationen-uebermittlungspflichtige-organisati.html>, 검색일자: 2019.10.22.

- 기부단체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부단체 고지가 취소되고 기부금을 수령할 수 없음
 - 이 경우 기부단체는 수익단체로 분류되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액의 20%의 법인세 부가세가 과세됨

3. 덴마크

가. 기부금 소득공제 개관

1) 기부금 공제 제도

- 개인이 기부금공제 가능 기관으로 승인된 비영리단체·법인·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은 연간 16,300덴마크크로네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됨¹⁶⁶⁾
 - 기관별 기부금액과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 총액의 약 26%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¹⁶⁷⁾
 - 국세청에 인가받은 기관·법인·종교단체 등에 기부 특약(최소 10년 이상의 일정금액 기부 약정)을 맺을 경우 또한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개인 소득과 자산 소득 합이 15% 혹은 연간 15,000크로네로 제한됨¹⁶⁸⁾
-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인가된 비영리단체와 공익기관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16,300크로네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됨¹⁶⁹⁾
 - 개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10년 이상의 기부특약을 맺을 경우 법인 과세소득의 약 15%까지 연간 공제 가능함¹⁷⁰⁾
- 개인 혹은 법인이 국세청에 승인된 연구기관에 기부한 기부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한도

166) PwC, *Denmark - Individual Deductions*, <http://taxsummaries.pwc.com/ID/Denmark-Individual-Deductions>, 검색일자: 2019.10.04.

167) 상동

168) IBFD, *Denmark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8.1.4. Donations*, 검색일자: 2019.10.7.

169) IBFD, *Denmark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 1.4.9.3. Donations to charities and other organizations*, 검색일자: 2019.10.7.

170) Section 12(2) of the Tax Assessment Law

16,300크로네를 넘어도 공제 가능함¹⁷¹⁾

- 해당 연구기관은 국세청에 해당 기부금액을 보고해야 하며 국세청이 해당 기관을 적격 단체로 승인한 연도 이후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함

□ 국세청에 적격비영리단체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에 납부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¹⁷²⁾

- 적격비영리단체로 승인되지 않은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내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또한 공제 불가할 수 있음¹⁷³⁾

2) 기부금 공제 대상 비영리단체

□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비영리단체는 덴마크 국세청·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에 한함¹⁷⁴⁾

- 기부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적격비영리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단체의 설립 목적에 대한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함¹⁷⁵⁾
- 승인을 위해서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해야 함
 - 기금 운용의 수혜가 특정 지역민 또는 35,000명 이하의 인구에 국한되지 않아야 함
 -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의 기부자 숫자가 매년 100명을 초과해야 함
 - 개인 기부금 총액이 과세연도에 최소 200크로네를 초과해야 함
 - 20,000크로네를 초과하는 건의 기부금 납부가 전년도에도 같은 국외의 기부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함
 - 연간 총소득 혹은 자산이 150,000크로네를 반드시 초과해야 함
- 신청 기관은 다음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운용해야 함

171) 덴마크 국세청, Personal Taxation/Deduction/Deductions for research gifts, <https://skat.dk/skat.aspx?oid=2082774>, 검색일자: 2019.10.11

172) 덴마크 국세청, Ongoing benefits for non-approved associations, etc., <https://www.skat.dk/ska.aspx?oid=2061728&chk=216359>, 검색일자: 2019.10.15

173) 2016년 덴마크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덴마크 국세청은 외국 재단에 대한 기부금 의무 공제(EU 회원국 원칙)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덴마크 국세청에 적격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기부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함, <https://skat.dk/skat.aspx?oid=2237110>, 검색일자: 2019.10.17

174) 덴마크 국세청(Danish Ministry of Taxation), Business/Tax/Application - Approval according to section 8 A and/or section 12(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https://skat.dk/skat.aspx?oid=1841901>, 검색일자: 2019.10.10

175) Order no. 1656 of 19 December 2018

- 사회복지 목적
- 연구목적
- 환경보호

- 독립 법인 기관의 경우 다음의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함¹⁷⁶⁾
 - 기관 임원 구성의 주된 방식이 자가 선출이 아니어야 함
 -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 내의 회비 지출 가입자가 300명을 초과해야 하며 이로 얻어진 회비 총액이 기관의 기본 행정비용을 충당할 금액이어야 함
 - 기존 기부금공제 승인기관의 자회사가 아니어야 함¹⁷⁷⁾

- 종교단체(religious communities) 또한 위의 공통조건에 추가하여 다음의 승인 규정을 충족한 경우에 적격비영리단체에 포함됨¹⁷⁸⁾
 - 덴마크 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가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 관련 법안에 의하여 종교단체로 인식되어 등록된 단체에 한함¹⁷⁹⁾
 - 단체의 목적이 인간의 기본권을 저해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아야 함

- 국세청이 적격비영리단체의 승인과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덴마크 국세청은 매년 적격비영리단체를 발표하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세청이 승인한 기부단체는 약 1,000여 개임¹⁸⁰⁾
 - 적격비영리단체 중 연구목적 기관에 대하여 따로 발표함¹⁸¹⁾

- 적격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세 혜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¹⁸²⁾
 - 과세연도에 기부된 공익목적 기부금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기부금 총액의 최대 25%를 향후 공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공제할 수 있음

176) 상동

177) 국가기관의 경우 본 규정에서 제외됨

178) 상동

179) 덴마크 복음주의 외 종교단체 관련 법안 및 기타 관련법안 참조(The Act on Religious Communities outside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Denmark)

180) 덴마크 국세청, 적격비영리단체 승인 목록 및 관련 법안, <https://skat.dk/skat.aspx?oid=2061734>, 검색일자: 2019.10.14

181) 덴마크 국세청, 적격비영리단체 중 연구목적 기관 승인 목록 및 관련 법안, <https://skat.dk/skat.aspx?oid=2082776>, 검색일자: 2019.10.14

182) 「이익·선물 공제 관련 법」(Deductions for ongoing benefits and gifts LL Sections 12 and 8 A)

- 부동산 형태로 기부된 기부금은 양도세 면제가 가능함
- 승인된 단체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함

- 적격비영리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덴마크 국세청에 해당 과세연도 10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함¹⁸³⁾
 - 날짜와 서명이 기입된 법령(Signed and dated statutes)
 - 최근 날짜의 재무제표
 - 적격비영리단체 승인을 위한 기본조건을 만족함을 증빙하는 서류
 -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이 아닌 해외 단체의 경우 본국에서 비영리단체로 승인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 적격비영리단체/종교단체는 국세청에 해당 단체가 받은 모든 기부금(종교 헌금 포함) 세부내역과 단체의 운영 내역 등을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¹⁸⁴⁾
 - 제출 정보는 소재지, 해당 비영리단체의 재무 대장, 회원 수, 전체 기부자 수, 전체 기부액, 연간 재무적 상황에 관한 세금신고서 등을 포괄함
 - 국세청은 필요시 단체의 운영에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는 반드시 요청된 정보를 제출해야 함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1) 기부금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주체

- 기부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할 수 없고, 적격비영리단체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기부 내역을 제출해야 함¹⁸⁵⁾

183) 덴마크 국세청, 「적격비영리단체 승인 신청서」(Approval according to section 8 A and/or section 12 (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Ligningsloven)), https://blanket.virk.dk/blanketafvikler/orbeon/fr/public_v/15_fa26f45b7bbfb5e69d419c965bcacc61e8b547bf/new, 검색일자: 2019.10.15

184) 덴마크 국세청(Danish Ministry of Taxation), 「비영리단체 기부금 과세 신청양식」(Donation form for charitable organisations - information on amounts donated etc.) - Approval according to section 8 A and/or section 12(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https://skat.dk/skat.aspx?oid=1841898>, 검색일자: 2019.10.21

185) 덴마크 국세청, Deductions for ongoing benefits and gifts LL Sections 12 and 8 A/Accounting requirements, checks, etc., <https://skat.dk/skat.aspx?oid=2061733> 검색일자: 2019.10.18

- 제출된 기부금액이 기부자의 세무신고서에 자동입력(pre-filled)되는 방식임
 - 기부금 공제를 위해 기부자는 해당 단체에 사회보장번호(CPR)를 제공해야 함¹⁸⁶⁾
 - 기업 또한 공제를 위해 해당 단체에 사업자번호(CVR)를 제공해야 함
 - 공제금액은 약 26%이며 물품 등의 구매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종교단체 또한 전체 기부금을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금액이 기부자의 세무신고서에 자동입력되는 방식임¹⁸⁷⁾
- 필요 정보는 덴마크 국세청(www.skat.dk)에 온라인으로 보고함

2) 자료 제출 방식

- 기부금이나 다른 형태의 물품/재산 등을 기부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해당 단체는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은 과세연도 다음해의 1월 20일임¹⁸⁸⁾
- 3월 1일 이후 재보고를 하거나 정보 제공 사항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부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함
 - 해당 기부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4년 후 4월 첫째 주까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적격비영리단체로부터 제출된 기부금 정보를 다른 납세정보와 함께 매년 3월 초 자동입력 방식으로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됨¹⁸⁹⁾
- 개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1일까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소득세액을 확정함¹⁹⁰⁾

186) 덴마크 국세청, 개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및 선물 공제, <https://skat.dk/skat.aspx?oid=2234772>, 검색일자: 2019.10.15

187) 덴마크 국세청(Danish Ministry of Taxation), 종교단체 기부금 과세 신청양식(Donation form for religious communities etc. - information on amounts donated etc.) - Approval according to section 8 A and/or section 12(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https://skat.dk/skat.aspx?oid=1841900>, 검색일자: 2019.10.21

188) 덴마크 국세청, Profession/eKapital/Reporting of gifts and contributions, <https://skat.dk/skat.aspx?oid=2244638>, 검색일자: 2019.10.22

189) 2018년 세금신고의 경우 2019년 3월 11일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소득신고자에 한하여 4월 5일 서면으로 신청서를 발송했음. <https://skat.dk/skat.aspx?oid=8599&clean=1>, 검색일자: 2019.10.21

190) 덴마크 국세청, 개인 소득신고 기한, <https://skat.dk/skat.aspx?oid=2241834>, 검색일자: 2019.10.23

- 법인의 경우 신고 과세연도의 다음해 10월경 연간 재무 원장이 온라인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확인됨¹⁹¹⁾

[그림 IV-1] 덴마크 기부금 단체의 기부내역 보고 서식

Approval according to section 8 A and/or section 12 (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Ligningsloven)

CVR

Type of application

Basic data


Representative and comments

Check your entries

Approval according to section 8 A and/or section 12 (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Ligningsloven)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 Signed and dated articles of association
- The latest financial statements – if the organisation is new, please provide documentation for assets or annual gross income
- A list of names and addresses of the individual donors from the EU/EEA who have made donations during the year.
- Non-Danish organisations and religious communities of EU/EEA countries must provide documentation for having obtained approval as a charitable or non-profit organisation in their homeland. This documentation could be a statement of exemption from income tax, for example.



[Next](#)

Approval according to section 8 A and/or section 12 (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Ligningsloven)

CVR

Type of application

Basic data

Representative and comments

Check your entries

CVR no. (business reg. no.) / SE no. (VAT no.)

Enter your CVR no. /SE no. here. If the below fields are not filled in automatically, you might have entered the CVR no. incorrectly.

Name of business (optional) **Type of business**

Business address **Business phone**

Business e-mail

CVR data is collected from the central business register (CVR) while data for SE numbers is collected from the Danish Tax Agency. In the case of SE numbers, the collection of data may take slightly longer. It is not possible to make changes in this solution. Go to [Virksomheder - Ændre virksomhed](#) (Danish only) to change the above information if it is incorrect.

[Next](#)

191) 덴마크 국세청, 법인세 신고, Pay on account tax and corporation tax, 검색일자: 2019.10.24

[그림 IV-1]의 계속

Approval according to section 8 A and/or section 12 (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Ligningsloven)

CVR

Type of application

Basic data

Representative and comments

Check your entries

Type of application

Under which Act are you seeking approval?

Section 8 A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Section 12(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On behalf of which type of organisation are you applying?

Charitable organisation etc.

Religious community etc.

Next

Approval according to section 8 A and/or section 12 (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Ligningsloven)

CVR

Type of application

Basic data

Representative and comments

Check your entries

Basic data

Municipality of domicile

In the last calendar year, did your organisation received one or more donations from the same non-Danish donator exceeding a total value of DKK 20,000?

Yes

No

Attach articles of association

[파일 선택](#) | 선택된 파일 없음

Attach financial statements

[파일 선택](#) | 선택된 파일 없음

Next

Approval according to section 8 A and/or section 12 (3) of the Danish Tax Assessment Act (Ligningsloven)

CVR

Type of application

Basic data

Representative and comments

Check your entries

Representative and comments

Name and address of representative

Comments (optional)

Review

출처: 덴마크 국세청, https://blanket.virk.dk/blanketafvikler/orbeon/fr/public_v/15_fa26f45b7bbfb5e69d419c965bcacc61e8b547bf/new, 접속일자: 2020.1.21.

3) 미제출에 대한 제재

- 덴마크 「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격비영리단체로서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적격비영리단체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¹⁹²⁾
- 적격비영리단체가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납부받은 기부금 및 기타 혜택을 사용할 경우 과세관청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인이 취소된 시점의 다음 분기부터 적용됨
- 재무관련 내역과 기타 기부금 수익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필요 서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격비영리단체 지위를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은 종교단체에도 적용됨

4. 노르웨이

가. 기부금 소득공제 개관

1) 기부금 공제 제도

- 개인이 노르웨이의 특정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연간 50,000크로네의 기부금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됨¹⁹³⁾
- 한도 내에서 기부한 금액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임¹⁹⁴⁾
-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연간 50,000크로네의 기부금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정부와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과학 연구소, 기부자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 교육기관도 기부금 공제 대상 기관에 포함됨¹⁹⁵⁾

192) 덴마크 국세청, CA4.3.5.2 Ongoing services for approved associations, etc. and religious communities - LL § 12 (2). 2 and 3, <https://skat.dk/skat.aspx?oid=2061727>, 접속일자: 2020.1.20.

193) IBFD, *Norway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7.1. Deductions, 검색일자: 2019.10.2.

194) 상동

195) IBFD, *Norway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Corporate Income Tax - 1.4.9. Other deductions, 검색일자: 2019.10.2.

- 기부금액이 10,000크로네를 초과하면 공제가능 기부금을 기부자의 과세소득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액이 10,000크로네를 초과할 경우 50,000크로네와 과세소득의 1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 공제가 허용됨¹⁹⁶⁾

2) 기부금 공제 대상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 중에서 국세청에서 사전 승인받은 비영리단체(이하 “적격비영리단체”라 한다)가 받은 기부금만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¹⁹⁷⁾
- 기부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적격비영리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함¹⁹⁸⁾
 - 단체의 고유목적이 수익사업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단체의 활동이 세법¹⁹⁹⁾에서 정한 활동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기부받은 해의 1월 1일 현재 단체의 활동²⁰⁰⁾ 범위가 지엽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를 들어, 고유목적 사업의 범위와 장소, 기부자 및 회원의 숫자와 지리적 분포를 설명하는 자료
 - 단체가 기부 대상 연도에 주정부 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문서
 - 단체의 정관, 단, 단체의 목적과 해산 후 잉여자금의 사용처²⁰¹⁾를 해산 조항을 포함할 것
 - 연간 재무 원장(account) 및 보고서(report)

196) IBFD, *Norway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Corporate Income Tax* - 1.4.9. Other deductions, 검색일자: 2019.10.2.

197) 노르웨이 국세청(The Norwegian Tax Administration), Business and organisation/Taxes/Tax return for businesses/Deductions/Gifts to volunteer organisations and religious and life stance communities,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tax-for-businesses/tax-return/deductions/gifts-to-volunteer-organisations-and-religious-and-life-stance-communities/apply-for-approval-of-an-organisation/>, 검색일자: 2019.10.2.

198) 상동

199) 기부금단체가 비영리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단체의 활동은 「조세법」(Taxation Act) 제6-50조(section 6-50) a항부터 f항까지에서 규정함.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청년/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또는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음악·문학·야외활동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 관련 활동, 종교 또는 신앙 관련 활동, 인권 또는 개발 원조 관련 활동, 재난 구호 활동, 문화/환경/자연 보호 및 동물 복지 활동 등이 있음.

200) 반드시 전국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활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201) 잉여자금이 단체의 승인받은 목적사업에 한하여 사용됨을 명시

- 종교단체(religious and life stance communities)도 국세청이 정한 승인 규정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격비영리단체에 포함됨²⁰²⁾
 - 종교단체도 국세청으로부터 적격비영리단체로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6가지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이해됨
- 유럽경제지역에 소재한 해외단체(foreign organisation)가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적격비영리단체로 인정됨²⁰³⁾
- 노르웨이는 국세청이 적격비영리단체의 승인과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노르웨이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세청이 승인한 기부단체는 노르웨이 국내단체 618곳²⁰⁴⁾, 국외단체 7곳²⁰⁵⁾임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1) 기부금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주체

- 기부자가 기부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적격비영리단체가 국세청에 제출²⁰⁶⁾한 금액이 기부자의 세무신고서에 자동입력(pre-filled)되는 방식으로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이 결정됨

202) 노르웨이 국세청(The Norwegian Tax Administration), Business and organisation/Taxes/Tax return for businesses/Deductions/Gifts to volunteer organisations and religious and life stance communities,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tax-for-businesses/tax-return/deductions/gifts-to-volunteer-organisations-and-religious-and-life-stance-communities/apply-for-approval-of-an-organisation/>, 검색일자: 2019.10.2.

203)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tax-return/find-item/3/3/7/2/>, 검색일자: 2019.10.7

204)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gift-and-inheritance/gift-to-organisation/list/>, 검색일자: 2019.10.2

205)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get-the-taxes-right/gift-and-inheritance/gift-to-organisation/list-foreign/>, 검색일자: 2019.10.2

206) 노르웨이는 기부금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 재산과 납부한 세금을 모두 국세청에서 공개적으로 공시하는 등 정보 공유와 공개가 자유로운 국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노르웨이의 이러한 개인 소득과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개 정책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 후 소득과 납부한 세금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제3자가 특정 납세자의 정보 열람 시 해당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열람 사실이 통보됨(출처:BBC, "Norway: The country where no salaries are secret," <https://www.bbc.com/news/magazine-40669239>, 검색일자: 2019.10.7.).

- 종교단체는 500크로네 이상의 기부금을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금액이 기부자 세무신고서에 자동입력 됨²⁰⁷⁾
 - 단, 해외 적격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 내역은 단체가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지는 않으며, 기부자가 공제 대상 금액을 직접 신고함²⁰⁸⁾
 - 개인이나 법인 기부자는 세무신고서에 자동입력된 기부금에서 누락된 금액을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해당 비영리단체에 연락하여 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액을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함²⁰⁹⁾
- 연간 10,000크로네를 초과한 기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된 금액에 한하여 기부금 소득공제가 허용됨²¹⁰⁾
- 관련 자료는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며, 사전에 제출할 의무는 없음

2) 자료 제출 방식

- 적격비영리단체는 국세청에 전자적 방식으로 단체가 받은 모든 기부금과 세부내역을 제출함²¹¹⁾
-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을 Altinn²¹²⁾이나 그 밖의 온라인 판독 프로그램(machine readable medium)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함²¹³⁾

207)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tax-return/find-item/3/3/7/2/>, 검색일자: 2019.10.2

208)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tax-return/find-item/3/3/7/2/>, 검색일자: 2019.10.2

209)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rates/gifts-to-voluntary-organisations/?year=2019#rateShowYear>, 검색일자: 2019.10.2

210)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tax-return/find-item/3/3/7/2/>, 검색일자: 2019.10.2

211)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tax-for-businesses/tax-return/deductions/gifts-to-volunteer-organisations-and-religious-and-life-stance-communities/>, 검색일자: 2019.10.2

212) Altinn은 우리나라 홈택스와 유사하게 국세청과 정보공유를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임(<https://www.altinn.no/en/>)

213)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reporting-and-industries/industries-special-regulations/voluntary-and-non-profit-organisations/tax-for-voluntary-and-non-profit-organisations/giftsdonations/>, 검색일자: 2019.10.7

- 기부금액 및 기부자에 대한 기본 개인정보를 포함한 RF-1310 또는 RF-1301의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함²¹⁴⁾
 - 기부자 이름, 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등록번호), 당해 연도의 총기부액, 기부금 수령단체의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함²¹⁵⁾
 - 적격비영리단체는 기부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기부자가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부 및 공제를 위한 필요적 기재사항들을 모두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²¹⁶⁾
 - 위와 같은 적격비영리단체의 기부 내역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²¹⁷⁾
- 적격비영리단체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20일임²¹⁸⁾
- 명시적으로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적격비영리단체로부터 연간 1회 기부금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은 적격비영리단체로부터 제출된 기부금 정보를 다른 납세정보와 함께 매년 4월 1일까지 자동입력 방식으로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제시²¹⁹⁾함
- 개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인 4월 30일까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소득세액을 확정함²²⁰⁾

214)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forms/tredjepartsopplysninger---gaver-til-organisasjoner/>, 검색일자: 2019.10.7

215)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reporting-and-industries/third-party-data/gaver-og-tilskudd/gaver-til-organisasjoner/retledning/>, 검색일자: 2020.1.31.

216)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reporting-and-industries/third-party-data/gaver-og-tilskudd/gaver-til-organisasjoner/retledning/>, 검색일자: 2020.1.31.

217)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reporting-and-industries/third-party-data/gaver-og-tilskudd/gaver-til-organisasjoner/retledning/>, 검색일자: 2020.1.31.

218)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reporting-and-industries/third-party-data/gaver-og-tilskudd/gaver-til-organisasjoner/>, 검색일자: 2019.10.7

219) 노르웨이는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시한 메일박스에서 소득세 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음

220) KPMG, *Norway - Income Tax*,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norway-income-tax.html>, 검색일자: 2019.10.7

- 한편, 해외 적격비영리단체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가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여 공제받음²²¹⁾
 - 기부금영수증은 성명, 주소, 노르웨이 납세자번호, 노르웨이 화폐 단위로 환산한 기부액 정보를 요구함

3) 미제출에 대한 제재

- 만약 적격비영리단체가 관련 정보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됨²²²⁾
 - 일부 내용 오기재의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벌금 부과는 자료 입력 제출 마감 기한 경과 후 수일 내로 이루어지며, 기한 후 제출 및 미제출한 기부자 1명당 1,172크로네가 부과되며 위 금액의 50배를 상한으로 가산될 수 있음

다. 비영리단체의 조세혜택과 관리방안

1) 비영리단체에 대한 조세혜택²²³⁾

- 노르웨이 소득세법(Income Tax) 제2-32에 따르면 단체가 정관에 사업목적을 비영리 목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면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됨
 - 일부 행사 참가비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와 같이 단체가 성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이것이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되면 관련 소득을 비과세함
 - 비영리단체의 정관에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이 영리목적 없이 처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함

221)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person/taxes/tax-return/find-item/3/3/7/2/>, 검색일자: 2019.10.2

222)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reporting-and-industries/third-party-data/gaver-og-tilskudd/gaver-til-organisasjoner/rettladning/>, 검색일자: 2020.1.31.

223) Ole Gjems-Onstad, *Norway Direct taxation: Income and net wealth taxation*, European Association of Tax Law Professors, <http://eatlp.org/uploads/public/Reports%20Rotterdam/National%20Report%20Norway.pdf>, 검색일자: 2019.10.25.

-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였는지가 단체의 소득세 비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면 노르웨이 세법은 분배요건을 고려하지 않음
 - 분배가 단체의 비과세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와 같이 소득을 비과세 신고할 수 있음

- 이때 소득세 면세를 위하여 단체가 반드시 자선사업을 영위할 필요는 없으며 소위 공공의 목적 없는 'evil' 단체도 요건에 부합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됨
- 법에서 비과세되는 단체를 특정하거나 열거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목적에서 운영되지 않는 모든 단체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됨

- 고유목적 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기타의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세 일반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 총이익(gross income)이 일정 금액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고유목적이지 아닌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의 비중이 단체의 전체 활동에 중대한 부문을 차지할 경우 단체가 비과세 대상 비영리단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됨
 -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체의 전체 활동 중 43%만 비영리 활동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결함
 - 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 결과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비과세되며, 그 밖의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은 일반적인 자본이득 과세 방법에 따라 과세됨

- 비영리단체가 과세 대상 소득과 자산을 미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임의적 기준에 따라 관련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추징된 세금을 수정하지 못함
 - 비영리단체는 개인이 아닌 단체의 소득신고서식인 RF-1028서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함²²⁴⁾

224) 노르웨이 국세청, Business and organisation > Reporting and industries > Industries with special regulations >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sations > Tax for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sations,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reporting-and-industries/industries-special-regulations/voluntary-and-non-profit-organisations/tax-for-voluntary-and-non-profit>

- 비영리단체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함²²⁵⁾
 -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함
 - 단체가 고의나 부주의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체의 임원급 경영진이 연대하여 원천징수 세금을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단체 중에서 국세청에 승인을 받은 특정 비영리단체인 적격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적격 비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자는 기부금을 소득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2) 비영리단체의 의무

- 노르웨이 과세당국은 기부금의 소득공제 대상 단체인 적격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됨²²⁶⁾
 -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는 단체가 고유목적 사용을 위해 받은 기부금을 해당 사업활동에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 규정 외에 기부금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
 - 기부된 자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만 있음
- 국세청이 적격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비영리단체와 다르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됨
 - 적격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의 승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재무 원장과 재무제표를 포함한 단체의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서류를, 기부자의 소득공제를 위하여 기부자와 기부금액 등의 세부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organisations/the-organisations-responsibilities/, 검색일자: 2019.10.25.

225) 노르웨이 국세청, Business and organisation > Reporting and industries > Industries with special regulations >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sations > Tax for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sations,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reporting-and-industries/industries-special-regulations/voluntary-and-non-profit-organisations/tax-for-voluntary-and-non-profit-organisations/the-organisations-responsibilities/>, 검색일자: 2019.10.25.

226) Ole Gjems-Onstad, Norway Direct taxation: Income and net wealth taxation, European Association of Tax Law Professors, <http://eatlp.org/uploads/public/Reports%20Rotterdam/National%20Report%20Norway.pdf>, 검색일자: 2019.10.25.

5. 스페인

가. 기부금 세액공제 개관

- 스페인은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법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함

1) 개인

- 스페인은 개인의 특정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²²⁷⁾
 - 개인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Law 49/200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은 공익 활동에 대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립과 조세혜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²²⁸⁾
- 기부금액과 기부단체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이 10~75%까지 다양함²²⁹⁾
 - 주정부, 자치단체(autonomous communities), 지방정부, 공립대학, 스페인 적십자(the Spanish Red Cross), 카톨릭 성당, 기타 적법하게 설립된 종교단체, 적격 재단과 협회에 150유로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75%가 세액공제됨
 - 위와 동일한 단체에 150유로 초과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가 세액공제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율이 35%까지 5%p 인상될 수 있음
 - 당기와 직전 2년 동안 지출한 기부금이 전년도 기부금과 동일하거나 증가한 경우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적격 재단이나 협회(foundations or associations)에 대한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0%만 세액공제 됨

227) IBFD, *Spai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8.3. Credits - 1.8.3.1. Gifts, 검색일자: 2019.10.28.

228) Law 49/2002, Of 23 December, Tax Regime Of Non-Profit Entities And Tax Incentives To Sponsorship, <https://www.global-regulation.com/translation/spain/1450639/law-49-2002%252c-of-23-december%252c-tax-regime-of-non-profit-entities-and-tax-incentives-to-sponsorship.html>, 검색일자: 2019.10.28.

229) IBFD, *Spai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 - 1.8.3. Credits - 1.8.3.1. Gifts, 검색일자: 2019.10.28.

- 한편, 위 공제에 추가적으로 정당, 선거관리 단체(electoral federations or groups)는 연간 600유로를 한도로 추가적인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됨²³⁰⁾

2) 법인

- 스페인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증여(gift) 거래로 간주하며,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며, 개인과 유사한 조건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됨²³¹⁾
 - 다만, 후원약정에 따른 기부금과 지역 산업개발 기업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함
- 후원약정(sponsorship agreement)에 따라 적격기부단체에 제공한 기부금은 제한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됨²³²⁾
 - 후원약정은 서면 형식의 계약서로, 적격기부단체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 적격기부단체가 법인에서 기부받은 후원 내용을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지역 산업개발 기업(a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company)에 대한 기부금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가 가능함²³³⁾
 - 고용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보상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이 특정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35%나 40% 비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됨²³⁴⁾
 - 35%의 비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음

230) 스페인 「소득세법」 제68조 (article 68 of the LIRPF)

231) IBFD, *Spai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 1.4.9. Other deductions - 1.4.9.5. Gifts, 검색일자: 2019.10.28.

232) Law 49/2002 및 IBFD, *Spai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 1.4.9. Other deductions - 1.4.9.5. Gifts, 검색일자: 2019.10.28.

233) 스페인 「법인세법」(article 15.1(e) of the LIS)

234) Law 49/2002 of 24 December 2002 및 IBFD, *Spai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 1.4.9. Other deductions - 1.4.9.5. Gifts, 검색일자: 2019.10.28.

- 공익성이 인정되는 등록된 재단이나 단체(예를 들어, 적십자)에 현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기부한 금액
 - 국가유산(the national heritage)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
 - 인정된 예술품의 기부
 - 스페인어의 홍보를 위하여 세르반테스 연구소(Servantes Institute)에 기부한 금액, 공식언어를 보유한 기타의 자치 지역 내 카탈로니아 Catalanian Institut Ramon Llull와 그 밖의 유사 단체에 기부한 금액
 -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부금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됨
 - 지속 반복적인 기부금이란 당기와 직전 2년 동안 지출한 기부금이 전년도 기부금보다 계속해서 증가한 경우를 말함
-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과세표준, net taxable income)의 10%를 한도로 제한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됨

3) 기부금 공제 대상 비영리단체

- 스페인의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 및 세제혜택은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음
- 비영리단체의 과세체계와 기부 세제혜택(de régimen fiscal de las entidades sin fines lucrativos y de los incentivos fiscales al mecenazgo) 법률 제16조에서는 기부금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단체를 열거하고 있음²³⁵⁾
- 공익목적, 국제개발협력, 운동 등의 단체로 동 법률에 따라 적합한 목적, 수입의 70%의 목적 사용, 운영자로서의 혜택 부여 방지, 해산 시 잔여재산의 기부, 관련 기관에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은 별도 요건 없이 해당됨

235) Iberley, <https://www.iberley.es/legislacion/ley-49-2002-23-dic-regimen-fiscal-entidades-fines-lucrativos-incentivos-fiscales-mecenazgo-421266>, 접속일자: 2020. 1. 30.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1) 기부금 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주체

-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국세청에 직접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납세자번호 등의 내역을 제출해야 함²³⁶⁾
 - 기부단체가 신고서식 Modelo 182. Declaracion Informativa. Donativos, donaciones y aportaciones recibidas²³⁷⁾을 국세청에 제출함
 - 기부단체는 기부를 받은 시점에 기부금영수증(certificado de donación)을 발행해야 하며, 해당 기부연도의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 Modelo 182는 이 기부금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기부금단체에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함
 - 제공정보는 기부자의 성명, 납세번호, 기부금액 등의 기초 정보와 이전 연도에 기부된 내역의 취소내역, 기부단체의 공제적용 여부 등의 내용도 포함됨

236) 스페인 국세청, Modelo 182. Declaracion Informativa. Donativos, donaciones y aportaciones recibidas, <https://www.hacienda.gob.es/en-GB/El%20Ministerio/Paginas/Procedimientos%20Administrativos/procadministrativos.aspx?idprocadmin=440&opc=2>, 검색일자: 2019.10.28.

237) “MODELO 182. Declaración informativa de donativos, donaciones y aportaciones recibidas” (출처: <https://oscargutierrezasociados.com/modelo-182/>, 검색일자: 2019.10.28.


[그림 IV-2] 스페인 기부금 단체의 기부내역 보고 서식 중

182

Datos identificativos de esta hoja interior

NIF del declarante Ejercicio Hoja interior n.º /

182758036347 2



Declarado 1

NIF NIF representante legal Apellidos y nombre,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Naturaleza

Cód. Prov. Clave % deducción Importe o valoración del donativo, aportación o disposición Donativo en especie Deducción Com. Autónoma % deducción Com. Autónoma Revocación Ejercicio revoc.

Tipo de bien Identificación del bien

• Sólo para claves C y D

Declarado 2

NIF NIF representante legal Apellidos y nombre,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Naturaleza

Cód. Prov. Clave % deducción Importe o valoración del donativo, aportación o disposición Donativo en especie Deducción Com. Autónoma % deducción Com. Autónoma Revocación Ejercicio revoc.

Tipo de bien Identificación del bien

• Sólo para claves C y D

Declarado 3

NIF NIF representante legal Apellidos y nombre,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Naturaleza

Cód. Prov. Clave % deducción Importe o valoración del donativo, aportación o disposición Donativo en especie Deducción Com. Autónoma % deducción Com. Autónoma Revocación Ejercicio revoc.

Tipo de bien Identificación del bien

• Sólo para claves C y D

Declarado 4

NIF NIF representante legal Apellidos y nombre,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Naturaleza

Cód. Prov. Clave % deducción Importe o valoración del donativo, aportación o disposición Donativo en especie Deducción Com. Autónoma % deducción Com. Autónoma Revocación Ejercicio revoc.

Tipo de bien Identificación del bien

• Sólo para claves C y D

Declarado 5

NIF NIF representante legal Apellidos y nombre,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Naturaleza

Cód. Prov. Clave % deducción Importe o valoración del donativo, aportación o disposición Donativo en especie Deducción Com. Autónoma % deducción Com. Autónoma Revocación Ejercicio revoc.

Tipo de bien Identificación del bien

• Sólo para claves C y D

Declarado 6

NIF NIF representante legal Apellidos y nombre,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Naturaleza

Cód. Prov. Clave % deducción Importe o valoración del donativo, aportación o disposición Donativo en especie Deducción Com. Autónoma % deducción Com. Autónoma Revocación Ejercicio revoc.

Tipo de bien Identificación del bien

• Sólo para claves C y D

출처: “MODELO 182. Declaración informativa de donativos, donaciones y aportaciones recibidas”
 (출처: <https://oscargutierrezsociados.com/modelo-182/>, 검색일자: 2019.10.28.

- 기부자인 납세자는 기부금단체와는 별도로 납세신고 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함
 - 과세관청이 기부단체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고 있어 납세신고 시 기부항목을 체크하는 것으로 기부금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임²³⁸⁾
 - 과세관청의 명확한 안내가 확인되지 않으나, 기부단체에서 기부 안내 시 기부금 항목에 체크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음

2) 자료 제출 방식

- 모든 단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기부금 세부 내역을 제출함²³⁹⁾
 - 기부금 단체는 Form 182 서식을 통해 기부자의 납세자번호, 대표, 납세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형태, 공제율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함

3) 미제출에 대한 제재

- 기부단체가 Modelo 182와 관련된 제재는 전자적 신고 의무 미이행과 지연·불이행의 두 가지로 구분됨
 - 기부정보를 전자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2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함²⁴⁰⁾
 - 기부정보를 적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소 150유로를 기본으로 정보 또는 정보구분 항목당 2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1만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음²⁴¹⁾
 - 과세관청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최소 300유로, 최대 2만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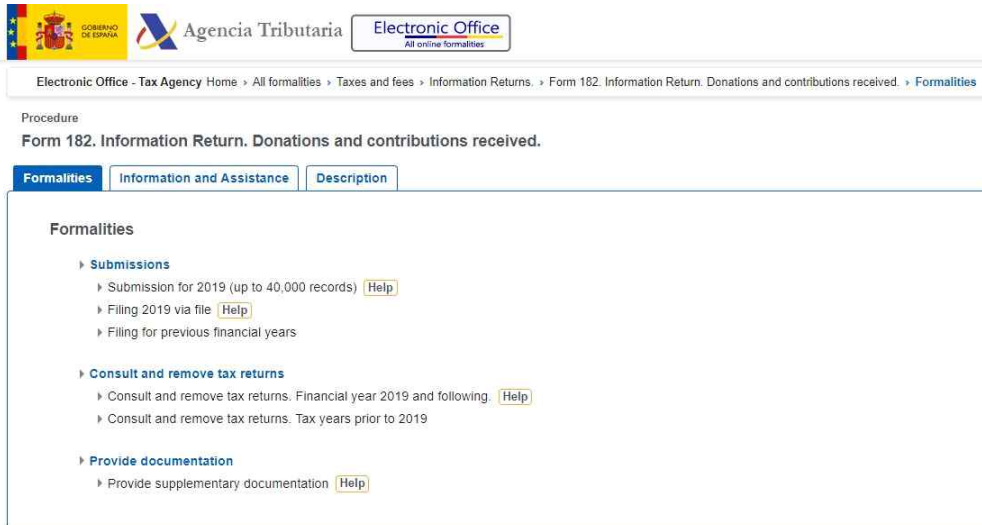
238) UNHCR Spanish Committee, <https://eacnur.org/es/desgravacion-del-irpf-en-tu-declaracion-de-la-renta>, 검색일자: 2020. 1. 31.

239) 스페인 국세청, Form 182. Information Return. Donations and contributions received., https://www.agenciatributaria.gob.es/AEAT.sede/en_gb/procedimientos/GI02.shtml, 검색일자: 2019.10.28.

240) Agencia Tributaria, Declaraciones Informativas 2016 y otras novedades tributarias, 2017, p.81.

241) CEconsulting, <https://www.asesoriafundacionesyasociaciones.es/preguntas-frecuentes-sobre-el-modelo-182/>, 검색일자: 2020. 1. 20.

[그림 IV-3] 스페인 기부금 세부내역 제출 홈페이지



출처: 스페인 국세청(https://www.agenciatributaria.gob.es/AEAT.sede/en_gb/tramitacion/GI02.shtml), 검색일자: 2019.10.29.

-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기한은 기부금이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임²⁴²⁾
- 2018년 발생한 기부금을 2019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다. 비영리단체의 조세혜택과 관리방안

1) 비영리단체에 대한 조세혜택²⁴³⁾

-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단체 소득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받는 것으로 이해됨
- 기부금 단체와 법인세의 감면 대상 비영리단체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가 감면 대상 비영리단체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됨

242) 스페인 국세청, https://www.agenciatributaria.es/AEAT.internet/Inicio/Ayuda/Manuales_Folletos_y_Videos/Folletos_informativos/Calendario_del_contribuyente/Calendario_del_contribuyente_2019_HTML/_Calendario/_Acceso_al_calendario_por_meses/_Enero/Hasta_el_31_de_enero.shtml, 검색일자: 2019.10.28.

243) IBFD, *Spai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 11.4. Association and cooperative, 검색일자: 2019.10.28.

- 영리 목적에서 설립된 재단이나 단체는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되며, 일부 공익성이 인정되는 재단이나 단체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소득이 전액 감면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의 일부가 감면됨²⁴⁴⁾
 - 특별법 Law 49/2002에 따라 일정 요건을 만족한 재단이나 단체는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소득과 일부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감면됨
 -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단체 중 일부 단체는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음
 - 스페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 단체에 지방정부 등과 같은 일부 기부금 단체가 포함됨

가) 특별법에 따른 비과세혜택

- 사회복지단체와 같은 다수의 기부금단체는 특별법 Law 49/2002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한 수익이 비과세됨
- 특별법에 따라 법인 소득의 일부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8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고유목적 사업의 성격, 특정 비율 이상의 수익과 자본 수준의 유지, 재무 보고 의무 등을 포함함²⁴⁵⁾
 - 사회사업, 교육, 과학, 건강 등과 같은 공익 목적의 고유목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 전체 수익(total income) 중에서 고유목적 사업을 제외한 사업활동의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4년 동안 고유목적 사업을 통해 얻은 순이익이 전체 순이익(net income)의 70% 이상 이어야 함
 - 기부자 또는 신탁자(trustees)에게 매년 각자의 계정(accounts) 정보를 보고하여야 함
 - 해산 시 단체의 고유목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본을 이전하여야 함

244) IBFD, *Spai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 11.4. Association and cooperative - 11.4.1.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검색일자: 2019.10.28.

245) IBFD, *Spai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 11.4. Association and cooperative - 11.4.1.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 11.4.1.1. Special tax regime, 검색일자: 2019.10.28.

- 고유목적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단체의 설립자나 회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단체의 관리자나 임원이 경비 보전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않아야 함
 - 사업 활동별 수익과 비용, 자본 중 상업활동에서 얻은 자본의 비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요건을 충족한 단체는 고유목적 사업활동에서 얻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익, 자본이득과 이자수익이 면세되고, 기타 다른 수익도 10%의 저세율로 과세됨²⁴⁶⁾
-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나 관련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면세대상 사업소득, 임대소득, 자본이득과 이자소득과 관련한 모든 조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사업세(business tax), 부동산세(immovable property tax), 자본세(capital duty) 등도 면세됨

나) 자본이득 면세 혜택

- 특별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 단체 중 특정 공익목적에서 설립된 단체는 고유목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이득 면세혜택을 적용받으며, 이 중 정당과 같은 기부금 단체가 포함되어 있음²⁴⁷⁾
- 해당 단체에는 정당, 무역연합(trade unions), 조합(associations of cooperatives), 전문가 조합(professional associations) 등이 포함됨
 - 자본이득 면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산의 처분금액이 4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에 재투자되고 매입한 자산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하여야 함
 - 자본이득이 면세되면 관련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25%의 세율로 과세됨

246) IBFD, *Spai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 11.4. Association and cooperative - 11.4.1.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 11.4.1.1. Special tax regime, 검색일자: 2019.10.28.

247) IBFD, *Spai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 11.4. Association and cooperative - 11.4.1.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 11.4.1.2. Partially exempt associations, 검색일자: 2019.10.28.

다) 비과세단체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단체 중 기부금 단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치지역(the autonomous regions) 등이 있음²⁴⁸⁾
 - 그 외 다음의 5가지 유형의 단체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 단체로 열거됨
 - 「법인세법」에 따른 비과세 단체로는 자치지역이나 정부가 설립한 자치법인으로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public entities)
 - 스페인 중앙은행(the Bank of Spain), 예금보험펀드(the Deposit Guarantee Fund), 투자보증펀드(the Investment Guarantee Fund)
 - 사회보장보험(the social security), 주관 공공기관(public entities)
 - the Institute of Spain, 공인된 왕립학술단체(the official royal academies)
 - 기타 특별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public entities)
- 이들 단체에 해당하면 관련 법인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2) 비영리단체의 의무

- 사회복지단체 등 대다수의 기부금단체는 특별법에 따른 기부단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스페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체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기부 단체에 대해 재무보고와 같은 의무를 부여함
 - 비과세 요건에 수익, 순이익 중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하도록 규정함
 - 또한, 기부자에게 매년 기부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보고서 제출도 강제하고 있음
- 그 밖의 정당 등 부분적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 하지 않음

248) IBFD, *Spai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1. Taxation of Special Types of Entity - 11.5. Non-taxable entities, 검색일자: 2019.10.28.

6.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본 기부단체가 국세청에 기부자와 기부내역을 직접 보고하는 유형 국가들의 기부금 관리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기부금 공제의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기관을 국가별로 비교하였으며 대부분 승인된 적격비영리단체/종교단체/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오스트리아의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단체 및 재무부에 등록된 단체에 한함
 - 덴마크에서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세관청에 승인된 비영리단체·법인·기관·종교단체(이하 적격비영리단체)임
 - 노르웨이의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비영리단체·종교단체 중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단체임
 - 스페인의 경우,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기관은 등록, 목적, 운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및 국가·국립대학 등 공공단체임

- 기부금 자료의 신고 주체를 국가별로 비교하였고 신고주체가 기부단체인 국가들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음
 -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부금 공제에 필요한 기부 자료의 제출 주체는 해당 승인 비영리단체임
 -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해당 적격비영리단체가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기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노르웨이 또한 승인 비영리단체에서 기부 자료를 직접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 스페인의 경우 기부정보의 제출 주체는 기부단체이나 기부자 또한 기부 내역을 확인해야 함

- 기부금 공제를 위한 기부 자료의 제출 시기는 대부분 연간 1회였으며 해당 과세연도가 지난 후 약 1~2개월 안에 기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됨
 - 오스트리아의 관련 자료 제출 시기는 해당 과세연도의 익년 2월 말임
 - 덴마크의 자료제출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익년 1월 20일까지임

- 노르웨이의 자료제출 기한은 덴마크와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 익년 1월 20일까지임
 - 스페인의 기부 자료 제출시기는 해당 과세연도의 익년 1월 말임
- 조사된 국가들은 대부분 전자적 형식을 통한 기부금 자료의 제출방법을 따르고 있었음
- 오스트리아의 기부 자료는 승인 기부단체에서 전자적 정보로 과세관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따르며 기부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없음
 - 덴마크 또한 기부단체가 온라인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기부 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기부자의 세무신고서에 기부내역이 자동 입력됨
 - 노르웨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와 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단체에서 직접 기부정보를 제출하나 해외의 적격비영리단체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신고 시 제출할 수 있음
 - 스페인의 제출방식 또한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단체에서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함
-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부금 자료의 미제출 또는 기타 부정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 취소, 가산세, 벌금 등의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부 자료의 미제출 시 기부자에 대한 공제 불허용, 미신고금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기부단체 승인 취소 등의 제재조치가 있음
 - 덴마크는 적격비영리단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또는 기부자료 미제출 시 단체의 승인 취소 및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 노르웨이의 경우 기부자료 부정신고 또는 미신고시 누락 기부자 수를 집계하여 누락된 기부자 1인당 벌금을 부과함
 - 스페인은 전자적 형태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고불이행 및 제출요구 불이행 시 벌금을 부과함

〈표 IV-2〉 주요국 기부금 공제 관리 비교

국가	세제혜택 대상 단체	기부자로 신고 주체	기부자료 제출시기	기부자료 제출방법	미제출 제재
오스트리아	법령에 정해진 단체 및 재무부에 등록된 단체	기부단체	해당 과세연도 익년도의 2월말	기부단체가 전자적 정보로 과세관청에 직접 제출함. 기부자는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기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기부자의 공제 불허용, 미신고 금액의 20%의 법인세부가세 부과, 기부단체 취소
덴마크	덴마크 과세관청에 승인된 비영리단체 · 법인 · 기관 · 종교단체 (이하 적격 비영리단체)	적격 비영리단체가 의무적으로 덴마크 과세관청에 기부자료를 제출해야 함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모든 기부금 내역에 대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기부자가 세금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직접 반영할 수 없으며, 적격비영리단체가 과세관청에 온라인으로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부자의 세무신고서에 자동입력되는 방식임	적격비영리단체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혹은 기한 내 기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비영리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또한 필요시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노르웨이	비영리단체 · 종교단체 중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단체(적격비영리단체)	적격비영리단체가 의무적으로 기부자료를 제출해야 함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모든 기부금 내역에 대해 다음해 1월 20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적격비영리단체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와 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함 (단, 해외 적격비영리단체의 경우 기부자가 직접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신고 시 함께 제출)	기부자료 부정신고 또는 미신고 시에는 누락된 기부자 수를 집계하여 누락된 기부자 1인당 1,152크로네(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함
스페인	등록 · 목적 ·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국가 · 국립대학 등 공공단체	기부단체, 단, 기부자도 기부행위 확인이 필요함	해당 과세연도 익년도의 1월말	전자적 방식으로 과세관청에 직접 제출함	전자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250유로, 신고 불이행 시 150유로에 각 미신고 항목당 20유로(최대 1만유로), 제출요구에도 불이행 시 최소 300유로(최대 2만유로)

출처: 본문 내용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V. 시사점 및 제안

1. 기부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전략

- 해외 사례 등의 조사 결과, 기부금 투명성 개선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 국가 등에서도 발견되나 특별한 행정절차는 확인되지 않으며, 행정에 있어 미세한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ECD 등의 보고서와 실제 조사 대상 국가에서도 허위 기부금 등을 제재하기 위한 많은 노력 등이 확인되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별한 행정절차는 존재하지 않음
 - 통상적인 행정절차에서 작은 절차상의 차이를 통해 투명성의 향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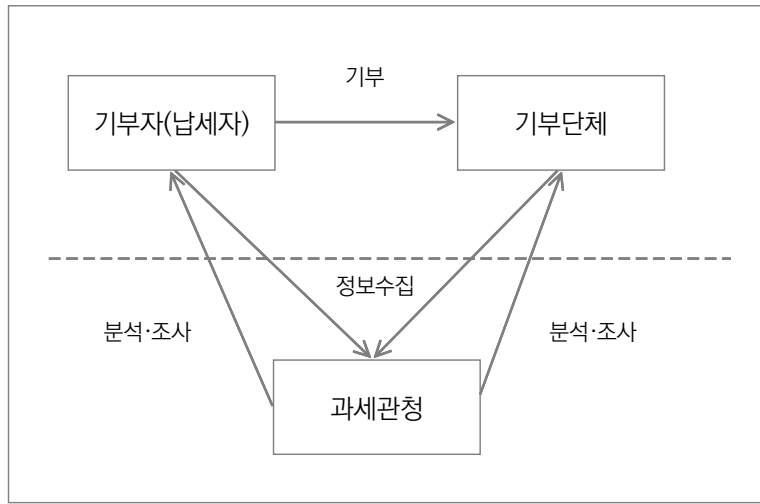
- 기부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크게 기부행위 접근과 기부단체 접근의 두 가지 전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기부행위 자체의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납세자와 기부단체 간의 행위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임
 - 두 번째는,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높여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령 행위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임
 - 기부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기부자의 다양성과 규모, 개인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캠페인 이외에는 다른 수단은 없다고 판단되어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가. 기부행위 접근방법

- 기부행위에서 행정절차는 정보수집, 분석, 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미세한 개선의 여지는 존재함
 - 정보수집은 과세관청의 기부행위 정보 수령 시 정보 제공주체, 시기, 방법에 관한 것임

- 분석은 수집된 정보를 기준으로 어떠한 분석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조사의 원천이 됨
- 조사는 기부 신고 내역과 실제 거래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임

[그림 V-1] 기부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자료: 저자 작성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부금의 투명성은 이러한 정보수집·분석·조사 단계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고 있음
 - 따라서 기부금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수집·분석에서 보다 향상된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자체는 신고된 기부금과 실제 거래의 대사로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개선 수단이 확인되지 않음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 세부적인 기부행위 접근방법 개선방안”에서 기술함

나. 기부단체 규율 접근방법

- 기부단체를 규율하는 방법은 기부단체의 투명성을 통해 기부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접적인 방법이고 규율의 한계가 존재하여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임

- 기부단체의 지배구조, 운영절차 등을 강화하여 기부단체 자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 투명성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간접적 조치라는 한계가 존재함
 -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는 결국 기부단체의 운영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나 이것이 기부금 투명성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님
 - 또한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는 모든 요소를 다 규율할 수 없어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 모든 요소의 규율은 그 효익 대비 규율 준수 비용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관리자의 일시적인 비도덕성 같은 중간의 하나의 허점만으로도 기부금의 투명성은 저해될 수 있음
- 특히,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부정 등이 다수 적발되는 상황에서 기존 단체 운영 차원의 규제는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상호작용인 기부행위 자체의 투명성 제고에는 큰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음
- 과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에서 종교단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2019년 기준 명단이 공개된 총 65개의 단체 중 의료법인 3곳을 제외한 62곳이 종교단체이며,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 47곳(3,438건 8,473백만원)은 모두 종교단체임
 - 그러나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이외에는 기부금단체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오히려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자료제출 요구, 실제 국세청이나 담당기관에서 기부단체나 기부금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데 불필요한 자료를 점검하고, 특정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행정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 비슷한 내용의 사용내역을 각자 다른 제목의 양식으로 보고하고 제출처, 제출시기와 제출 의무 여부도 다른 경우를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최소한의 기준으로 기부단체 대표자 등의 정보를 매년 신고하도록 하여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인력운용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기부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대표자 등 관리인의 도덕적 자세이며 이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대표자의 경력과 전과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당해 기부금 단체에 대한 위험평가 시 고려할 요소로 검토해볼 수 있음

- 내부적 운영통제제도의 운영·평가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소규모 기부단체 등을 고려할 때 운영통제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실효성이 없음

2. 세부적인 기부행위 접근방법 개선방안

가. 정보수집의 강화방안

-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정보의 수집이 가장 핵심이며, 정보 수집행위 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적정한 기부금 정보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이후 단계인 분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최대한 세부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과세관청에 허위 정보 제공 부담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적인 예방 효과도 일부 가져올 수 있음
- 정보 수집에 있어 정보제공자, 시기, 이행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정보제공자는 현행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를 통하는 방법(일부 기부장려금단체와 자발적 신고 기부단체 존재)과 납세자와 기부단체 모두 또는 기부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이 있음
 - 조사대상 국가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유럽 국가는 기부단체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시기는 현행과 같이 연간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거래별 또는 월별로 적시에 신고하는 방법이 존재함
 - 이행방법은 현행과 같이 납세자에게 의무로 부여하면서 기부단체에 자발적 신고를 허용하는 방안과 기부단체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음

〈표 V-1〉 정보수집 방안

정보제공자	시기	이행방법	적요
납세자 (일부 기부단체)	연간	납세자: 의무 기부단체: 대부분 자발적	현행방법
납세자, 기부단체 모두	연간	납세자: 의무 기부단체: 의무 또는 자발적	자발적일 경우 인센티브 부여 필요 (특히,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일 경우 전제조건 필요
기부단체만	연간	기부단체: 의무	
기부단체만	거래별 또는 월별	기부단체: 의무	

출처: 저자 작성

- 정보수집 관련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단체로 하여금 기부금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임
 - 이 방법은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신청 제도의 전면 도입 또는 과세관청의 요구 시 제출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 다만, 현행 기부단체의 정보제공과는 차이가 있음
 - 현행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은 개인 주민번호 기준의 기부자만을 대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 및 사업자 대상으로 범위 확대가 필요함
 -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익년 6개월 이내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서 서식상 합계액만이 표시되므로 차이가 존재함
 - 국세청에서 전자시스템 구축 등의 방법으로 위 두 명세서의 제출 항목을 통합하는 하나의 서식을 마련한다면 기부단체의 신고 협력비용도 감소하고 과세관청의 정보수집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시 국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므로 소규모 기부단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정보 제공 어려움 문제는 상대적으로 해결 가능함
- 기부단체의 기부금 내역 신고 방법은 기부금 투명성 측면에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기부단체가 대규모 금액의 세부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동에 부담을 지게 할 수 있음

-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별로 기부금 금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거짓행위 신고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작음
- 납세자가 기부단체와 관계없이 허위 영수증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확인되는바, 기부단체의 정보를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시 이러한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관리 대상의 수가 작으므로 납세자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관리하기가 용이함
- 다만 기부단체의 정보제공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와 기부단체의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납세자가 아닌 기부단체가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존재함
 - 정치적 성향의 단체·종교단체 등의 경우 악용될 경우 차별의 파급력이 더 클 수 있음
 - 소규모 기부단체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정보제공이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투명성 요구에 따른 문제점으로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무시할 수 없음
- 기부단체가 개인의 기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 및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유사 쟁점의 헌법재판소 결정²⁴⁹⁾를 참고하였을 때 헌법 위반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납세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소득자인 기부자들의 기부 정보가 본인들의 동의 없이 국세청으로 제출·전송·보관되는 것은 그 기부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음
 - 법령 조항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래 사항만을 가정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됨
 - ①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근절하여 기부금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입법 목적
 - ② 기부금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만을 제출 대상 정보로 제한하는 방법
 - ③ 자료제출제도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장치 설정
 - 기부자가 정보제공의 거부 및 세액공제 혜택 부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사를 표명하면 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자료제출 의무를 완화
 - 자료 조회 출력 대상을 당사자 및 부양가족 본인 등 좁은 범위로 제한

249)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등 결정.

- ④ 관리 사각지대였던 기부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따른 공익의 중대성
- 기부단체의 경우를 다른 의무적 자료제출기관과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임
 - 소득공제 여부, 공제대상 지출항목 선정, 증빙방법 결정 등의 사항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에 속함²⁵⁰⁾
 - 단, 기부단체로 하여금 기부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자의 결정에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여야 함
 - 현재도 기부금 이외의 다른 세액공제 항목은 국세청에 정보가 제공되며, 기부금 정보 또한 과세관청 요구 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3. 전제조건: 기부행위 투명성에 대한 인식파악 필요”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본 방안의 정당화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 기부단체에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납세협력 비용의 고려가 필요함
- 기부금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기부행위 발생 시마다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나, 기부단체(특히, 소규모 기부단체)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통상적인 상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거래별 발생 시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측면과 소규모 기부단체의 인력 한계 등이 제약요소로 작용함
 - 해외 사례에서도 기부행위 발생 시 또는 월별 신고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모두 연별 기부행위를 취합하여 신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신고시기는 현행과 같이 기부명세를 연별로 취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기부행위 시, 일별, 월별 등의 연별 신고 이외의 방법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우리나라의 기부금 투명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또는 다른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별, 월별 보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이를 위한 방안은 “3. 전제조건: 기부행위 투명성에 대한 인식파악 필요”에서 기술함

250)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등 결정.

- 다만, 기부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기부행위 시 자발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증빙 수취 및 교부의 간편화, 과세관청의 기부행위 파악 및 기부금 관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단, 위 제도 도입 시 의무화의 정도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논리적 근거로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령 시마다 국세청 전산에 일정 기한 내에 직접 건별로 입력 또는 정보를 업로드하도록 허용함
 - 일본의 경우 기부자가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의 종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받은 증명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선택적 발급을 허용함
 - 자발적 허용은 기부금 투명성 그 자체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부단체의 신호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기부행위에 문제가 있는 기부단체는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만약 기부단체 정보제공을 의무로 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포함하여 정보제공 기부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납세자의 매출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유도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부행위 투명성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함
 - 정보제공에 기부단체의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되며, 적시 정보제공 단체는 보다(기부단체 자체가 아닌)기부금 행위에서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인센티브는 현행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이외에 납세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임
 - 세제가 복잡해지지만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세액공제액이 자동산정되므로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은 없으며, 법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존재하거나 자체 협력능력이 있음
 - 해당 기부단체가 높은 세제혜택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세청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안내함

- 기부금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²⁵¹⁾를 전산화하여 적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방안과 관련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 일본 조항을 참조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은,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조항을 법률에 두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제출 방법이나 제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²⁵²⁾
 - 일본의 경우 기부자가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의 종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받은 증명서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시행령 차원에서 최초로 규정하고 있음²⁵³⁾
 - 우리나라는, 연말정산 간소화의 일환으로 기부금 수령단체가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당해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현행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전산화하여 상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형태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²⁵⁴⁾
 - 다만 현행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²⁵⁵⁾에는 작성방법에 대한 위임규정이 존재하므로²⁵⁶⁾, 하위 법령에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기부단체의 신고 내용 중에서 기부환급내역 정보 및 기부방법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양식에는 기부금 수령에 대한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규모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기부 후 환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대부분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단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자동적인 기부가 이루어지다가 중단하는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은 기부금을 환급해달라는 요구가 존재할 수 있음

251) 「법인세법」 제112조의1 제2항.

25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항.

253) 일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2조.

254) 헌법재판소 2008. 10. 30.선고 2006헌마1401등 결정 참조.

255) 특별히 제출시기에 관한 의무 부과 없이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2항).

256)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1항.

- 또한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의 기부방식의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는 허위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반대로 현금은 위험성이 가장 높으므로 분석 시 필요한 정보로 판단됨

[그림 V-2]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양식

기부내용		40:기정기부금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부내용구분	기부금단체코드	기부일자	기부금액 합계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예1) 700101123456 예2) 010203-3234567 사업자번호는 제출불가 (연말정산은 개인만 대상)	기부자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최대 40bytes(한글20글자)까지만 처리됩니다. 예) 홍길동	1:금전기부 2:현물기부 우측 역삼각형 화살표를 눌러 값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사하여 사용	기본정보탭의[기부금단 체코드]를 참조하여 해당코드(알파벳 3자리)를 입력합니다. 예1) AAA 예2) BAA	기부일자를 '년(4)월(2)일(2)' 형식으로 연속하여 입력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의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예1) 20150102 예2) 2015-01-02 예3) 2015.01.02	공제대상 기부금액 +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예1) 1000 예2) 1000 예3) 1000	기부장려금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액 합계와 같은 금액을 입력 예1) 500 예2) 1000 예3) 0	기부장려금 신청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 입력 예1) 500 예2) 0 예3) 1000

주: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기부금자료 제출 신청 및 승인 완료된 기부금단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자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나. 분석 방법 및 조직 개선

- 적정한 정보가 적시에 수집되었더라도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적절한 분석 기법이 필요함
 - 정보의 수집만으로도 거짓 기부금 행위자들에게 신호를 줄 수 있으나, 검증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인 기부금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음
 - 적정한 정보 분석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만을 가져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 현재 과세관청의 정보 분석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분석 방법 향상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 충원은 과세관청 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또는 담당 과의 전담 인력 충원이 필요할 수 있음
 - 허위 기부자 및 기부단체의 행위 분석을 통해 분석 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현재 분석 방법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주요 예상되는 기부자와 기부단체의 위험 가능성 높은 사례를 제시함
 - 기부자 주소와 기부단체 주소의 거리
 - 기부자의 소득 대비 과다한 기부금, 전년 대비 과다한 기부금
 - 동일 직장 또는 동일 지역 내 기부자의 동일 단체 다수 기부
 - (의무 또는 인센티브 부여 시) 신고하지 않는 기부단체
 - 전년 대비 기부금 모집 증가율이 큰 기부단체
 - 기부행태에 이전과 당기 또는 당기 기부내역과 상충되는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3. 전제조건: 기부행위 투명성에 대한 인식 파악 필요

- 기부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무 강화를 위해서는 거짓 기부행위가 현재 시점에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답변이 요구됨
 - 일반인들은 기부단체 규율 등 단체 운영 관련 개선사항을 놓고 기부행위 자체의 투명성도 함께 개선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연구들이 대부분 기부단체 운영의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
 - 거짓 기부금 행위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단체의 비도덕적행위로 인해 파장은 크지만, 실제 그 규모나 질적 수준이 유의하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만의 기부금 총액이 2017~18기간에 연 약 5조~6조원 수준에 비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상 적발된 허위 기부금영수증은 과거 6년간 150억원 수준(2014년 410억원)으로 0.3% 내외에 불과함
- 따라서 최근 기부단체의 운영 불투명성 사례로 인해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에서 기부단체의 운영 투명성 의구심은 크지만 기부행위에 대한 투명성에도 의구심이 높은지는 의문임
 - 기부행위의 투명성이 낮지 않다는 인식이 만연하면, 비영리법인에 과다하고 중복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는 점과 종교가 개입된 경우 의무 강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 제약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의무의 강화 수준에 비례하여 일시적인 인식 파악으로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유의성 전파가 필요함
 - 2014년의 조사에서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 금액이 약 410억원으로 큰 점을 고려하면 강화된 조사 시 큰 규모의 허위 기부금이 확인될 가능성이 존재함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상 금액은 파악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기부금 투명성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이의 개선 시급성을 전파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세청, 「공익법인의 세무안내」, 2019

김무열, 『공익법인 세제 정비 및 후속 관리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9.18.

이상신, 「공익법인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조세법연구』, 22(3), 2016.11.

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 Datenübermittlung Sonderausgaben für
übermittlungspflichtige Organisationen, 2017

European Fundraising Association, “Tax Incentives for Charitable Giving in Europe”,
2018.12.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The Tax Book 2019*, 2018

House of Commons Committee of Public Accounts, Gift Aid and other tax reliefs
on charitable donations, 2014.1.

Mrs Alexandra Grainger, “Donations to SCI are tax deductible across the European
Union,” 2015.5.29.

OECD, *REPORT ON ABUSE OF CHARITIES FOR MONEY-LAUNDERING AND TAX
EVASION*, 2009.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to the Ranking Member,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U.S. Senate,”
2014.12.

〈웹사이트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국세청 통계연보, <https://stats.nts.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노르웨이 국세청, <https://www.skatteetaten.no/en>,

덴마크 국세청, <https://skat.dk/skat.aspx>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consumer.ftc.gov>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
미국 법무부, <https://www.justice.gov/>
미국 연방수사국, <https://www.fbi.gov>
미국 정부, <https://www.usa.gov/>
비영리협회, <https://www.councilofnonprofits.org/about-us>
상업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 <http://www.give.org/>
스페인 국세청, <https://www.agenciatributaria.gob.es/>
오스트리아 재무부, <https://www.bmf.gv.at>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BoardEffect, <https://www.boardeffect.com>
CEconsulting, <https://www.asesoriafundacionesyasociaciones.es>
Fidelity Charitable,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
Iberley, <https://www.iberley.es/>
IBFD, <https://www.ibfd.org/>
KPMG, <https://home.kpmg/xx/en/home.html>
NASCO, <https://www.nasconet.org>
OECD, <https://www.oecd.org/>
Pwc, <http://taxsummaries.pwc.com>
UNHCR Spanish Committee, <https://eacnur.org>

세정연구 19-02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

발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TEL: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인쇄 디자인 범신
I S B N 978-89-8191-592-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세정연구 19-02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 www.kjpf.re.kr

